

알기 쉬운

적하목록업무 e-매뉴얼



- ▷ 담당부서 : 통관지원과
- ▷ 전화 : 051)460-6132~9

부산세관 통관지원과

목 차

1장. 해상수입화물의 적하목록	5
1절. 입항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7
2절. 적하목록 심사(관리대상화물 선별) - 화물검사과	15
3절. 적하목록 수정 및 취하 신고 - 화물검사과	16
4절. 적하목록 정정 - 통관지원과	16
5절. 하선신고	19
 2장. 해상수출화물의 적하목록	 24
1절. 출항적하목록 제출	25
2절. 출항적하목록 정정	29
3절. 출항적하목록 전송 오류 사례	33
 3장. 환적화물의 적하목록	 37
1절. 입항적하목록 제출	38
2절. 적하목록 심사	38
3절. 하역	38
4절. 반출입 신고	39
5절.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등	39
6절. 출항적하목록 제출	40
7절. 환적화물의 적하목록 정정	41
8절.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 증명서 발급	41
9절. 환적화물 운송절차에 대한 특례	42
 4장. 민원인을 위한 업무 Q & A	
I . 입항적하목록	45
II . 하선신고정정	67
III . 출항적하목록	77
IV . 환적화물 적하목록	96
※부산세관 운항선사별 담당조 및 전화번호	104

적하목록업무 매뉴얼

■ 보세화물관리

● 보세화물(수입물품)

- ◇ 보세화물(수입물품)은 관세의 징수가 유보된 상태, 즉 외국에서 화물이 도착되어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 수출물품

- ◇ 수출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그 법적 성격이 외국물품이므로 수출신고수리 후 외국무역선에 선적되어 출항할 때까지 세관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 환적(통과)화물

- ◇ 환적화물은 수입물품도 수출물품도 아닌 단지 외국에서 선적되어 제3국으로 운송되는 도중 우리나라 항구를 경유하는 물품, 즉 우리나라 항구에 일시양륙하였다가 환적하는 물품으로서 국내로의 불법유입을 방지하거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위장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에서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보세구역(Bonded Area), 보세운송

- ◇ 보세구역은 수출신고를 마친 수출물품이나 수입신고를 하기 전의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뜻하고,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은 수출신고를 마친 수출물품이나 수입신고를 하기 전의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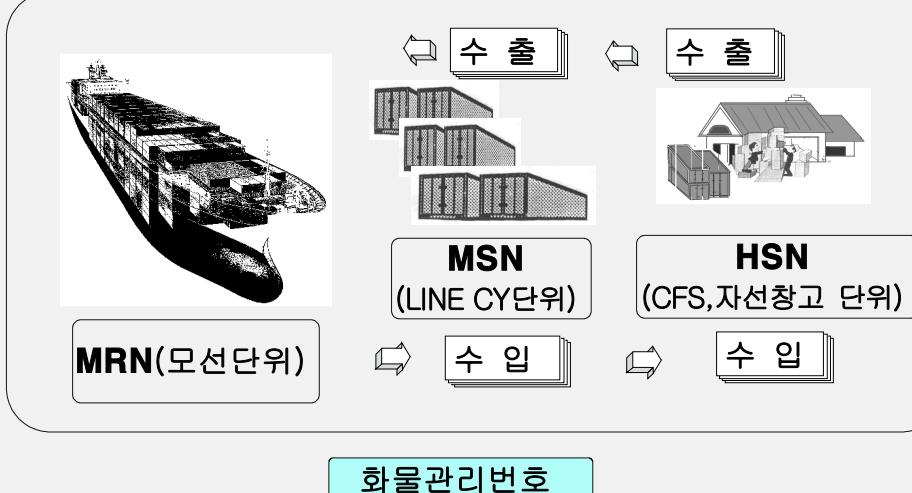
■ 용어의 정의 및 구조

● 적하목록

- ◇ 적하목록은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적재된 화물의 종괄목록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 장고배정, 보세운송,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뿐만 아니라 물류관련업체, 화주 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관세법 제135조에서는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할 때 또는 입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적하목록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서, 화물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화물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 “적하목록”이라 함은 관세법 제225조(선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취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필요시 당해 업무에 관해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32조(세관장이 보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사,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보세화물의 이상내역 등) 규정에 의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을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흔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함

● 적하목록의 구조



●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라 함은 작성된 적하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자로 당해 선박을 운항하는 운항선사 (쉽게 말하면 선박 주인 회사)

●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라 함은 적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제 작성한 자를 말하며, 통상 선하증권을 발행한자의 국내 법인(본사, 지사), 대리인(흔히 파트너라함)이라고 보면 됨

※ 예 : H상선 미국지사 발행 선하증권의 내역 → H상선 국내지사가 적하목록 작성

미국의 A포워더 발행 선하증권의 내역 → 국내 파트너인 B포워더가 적하목록 작성

○ 규정상 작성책임자

- ① 수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운항선사(대리점 포함)
- ② 공동배선의 경우 선박의 선복을 용선한(일부를 빌린) 선박회사(대리점 포함)
- ③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

● 하선(기)장소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양륙하여 최초로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

● Master B/L (물건이 선적된 선사 또는 콘솔사의 B/L)

CY-CY조건으로 운송시, 포워더가 필요하지 않은 선적시에 주로 쓰이며,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 House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으로서 수출입신고할 때의 B/L번호와 일치되는 것으로 대부분 포워더에서 발행하며, 그 포워더의 도착지 파트너와 주고 받는 비엘.

● 관리대상화물

수입 및 환적화물에 대하여 세관의 정밀심사 또는 정밀검사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선정한 물품으로 “검색기 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로 구분됨

● 환적물품

외국무역선(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로 적하목록상 수하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수출입 통관절차 없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 관리번호	+	Master B/L 일련번호	+	House B/L 일련번호
--------------	---	--------------------	---	-------------------

○ 적하목록관리번호(MRN:Manifest Reference No.)

선사가 작성한 Master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 선사가 부여한 제출 일련번호 MRN은 제출년도(숫자2자리)+선사부호(영문자4자리)+일련번호(숫자 및 영문4자리)+오류검증부호(숫자1자리)로 구성된다. (총 11자리)

○ Master B/L일련번호(MSN : Master B/L Sequence No.)

선사의 Master 적하목록에 기재된 Master B/L의 일련번호 (숫자 4자리)

○ House B/L일련번호(HSN : House B/L Sequence No.)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작성한 혼재화물적하목록에 기재된 House B/L의 일련번호 (숫자 3자리)

※ B/L 타입이 S(SIMPLE)인 경우에는 House B/L일련번호가 없으므로 관련 화물의 화물관리번호는 적하목록관리번호+Master B/L일련번호로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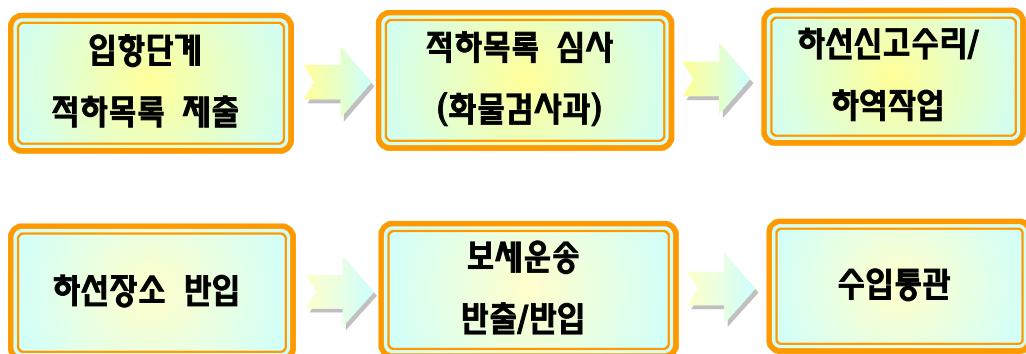
※ 예) 현대상선으로 2008년 부산항에 반입된 특정화물의 화물관리번호

☞ 08HDMUA1234-000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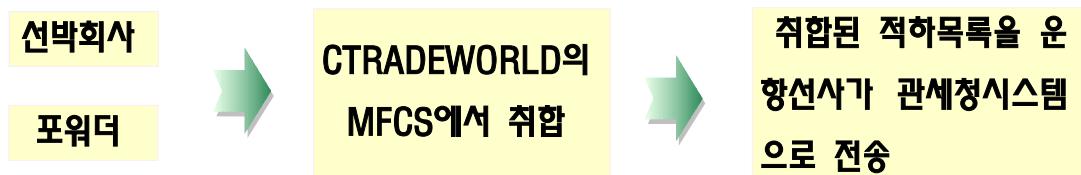


1장. 해상수입화물의 적하목록

● 수입화물관리의 개요



● 적하목록 전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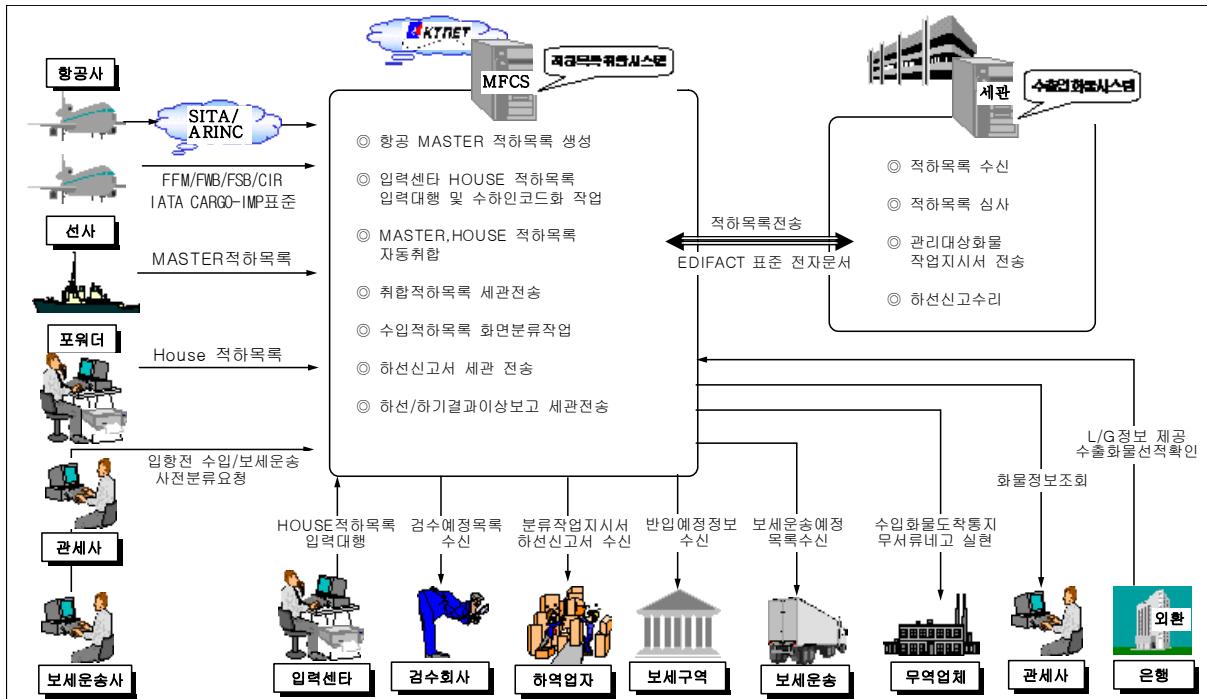


(MFCS : ManiFest Consolidated System, KTNET에서 운영)

□ 적하목록 취합시스템 (MFCS :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 선사, 포워더가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사용되는 적하목록 취합 및 제출시스템
-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모든 선사 및 포워더는 KTNET에서 운영하는 적하목록취합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들이 작성한(할) 적하목록을 전송(작성)하고 운항선사는 최종적으로 취합된 적하목록을 세관으로 전송하게 됨 (운항선사만이 적하목록 제출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음)

● MFCS 시스템 전체 흐름도



● MFCS 시스템 주요기능

- 선사, 항공사 및 포워더의 적하목록 취합기능
 - 일원화된 적하목록 세관신고를 위하여 선사, 항공사의 MASTER 적하목록과 운송 주선사인 포워더의 HOUSE 적하목록을 전산으로 체계화하여 취합
- 적하목록 제출 과정
 - 적하목록제출⇒ 오류통보⇒ 적하목록제출⇒ 보완마감⇒ 선별마감

✿ 주의할 점

입항적하목록의 전송은 출항적하목록과 달리 운항선사만이 오류통보를 확인할 수 있어, 용선사 및 포워더는 운항선사의 유선통보에 의지 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항선사는 유선통보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전송의 기회도 2회로 한정됨

1절. 입항적하목록작성 및 제출

(1) 작성서식 및 요령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2-1-2조의 규정의 별표1 적하목록기재요령에 따라 별지 제1-1호(해상수입화물적하목록) 제1-2호(해상수입혼재화물적하목록)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1) 작성 대상

- ①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 양류할 화물
- ②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해 일시양류할 화물

2) 주요 항목

- ① 화물구분 : 수입화물(I), 환적화물(T)
- ② 화물속성 : “1” [외항선으로 국내 개항간 운송하기 위한 수입화물을 최초입항지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시 기재, MFCS에 최종목적항(국내항)을 기재 한 건만 제출가능)]

□ 국내개항간운송시 적하목록 제출방법(예>외국항→부산항→인천항, 수입화물)

구 분	화물구분	화물속성
1) 최초입항지세관(예: 부산 입항시)	수입화물(I)	“1” (국내개항간운송)
2) 최초입항지세관(예: 부산 출항시)	환적화물(R)	-
3) 최종입항지세관(예: 인천 입항시)	수입화물(I)	-

- ③ B/L 타입 : S (Master B/L에 종속된 House B/L 없음, SIMPLE), C (House B/L이 있는 경우, CONSOL), E (공컨테이너, EMPTY), 즉 선사가 화주에게 직접 B/L을 발행한 때는 “S”, 선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한 때에는 “C”로 표시, “C”로 표시된 경우 별도로 House B/L내역을 기재한 혼재화물적하목록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④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NO) : MASTER B/L 번호(선사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 HOUSE B/L 번호(포워더(해외파트너)의 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 번호), 총 16자리범위내에서 기재
- ⑤ 적재항(Port of Loading) : 선박에 물품이 적재된 항구코드로 ISO(국제표준화)지역코드 5자리를 기재(국가2+항구명3)
예) LONGBEACH: USLGB
- ⑥ 수하인(consignee) :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의 소지자(지시식인 경우는 “To order~”를 기재)
- ⑦ 통지처(notify party) : 물품도착통지처, consignee가 “To order~”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same as above”를 기재하고 이하 생략 가능
- ⑧ 송하인(Shipper) :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 ⑨ 품명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규격은 기재 생략).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 품명을 기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 기재
예) SPEAKER(ELECTRO-VOICE BRAND), SPEAKER ETC

⑩ 컨테이너번호(Container NO) : 수입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번호를 기재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벌크화물은 “IN BULK”
 로 표기, 컨테이너 규격과 종류는 ISO코드 4자리로 기재
 (입출항 적하목록 모두 1B/L 당 999대까지 기재가능)

코드	내용/종류	코드	내용/종류
AS	air/surface container	RE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BK	dry bulk container - pressurized	RS	thermal container - self-powered refrigerated/heated
BU	dry bulk container - nonpressurized, box type	RT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and heated
GP	general purpose container without ventilation	SN	named cargo container
HI	thermal container - insulated	TD	tank container- for dangerous liquids
HR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or heated	TG	tank container- for gases
PC	platform(container)- folding(collapsible)	TN	tank container- for nondangerous liquids
PF	platform(container)- fixed	UT	open-top container
PL	platform(container)- incomplete superstructure	VH	general purpose container with ventilation
PS	platform(container)- complete superstructure		

⑪ 포장개수 : 운송용 포장종류의 구분기준에 따른 물품의 포장개수로 B/L별 포장개수를 기재, 포장종류가 2종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의 총증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 종류를 기재

단위	내용	단위	내용
BA	통	HH	휴대품
BC	맥주 박스 모양의 상자	IZ	주철괴
BE	다발, 꾸러미등 묶음 포장단위	NT	그물
BG	자루,부대	OU	외포장이 없는 개,두,필,대,기,척,착 등
BJ	양동이	PG	판
BL	광목, 원단등 감아놓은 상태	PI	파이프
BR	막대	PU	뚜껑없는 관막이 상자
BV	전구모양의 병	RL	줄감는 틀
CA	캔	RO	두루마리
CH	나무상자 꽈	SK	골조 상자
CJ	관	VG	기체상태 벌크
CL	코일,나선형으로 둘둘 감은 것	VL	액체 상태의 벌크
CR	Wooden Box,Wooden Case 대체용기	VO	덩어리 상태의 벌크
CS	그릇, 상자, 케이스	VQ	액화가스상태의 벌크
CT	판지로 만든 상자	VR	곡물벌크
DR	드럼통	VT	기타 벌크물품
GT	기타 개수를 헤아릴수 있는 물품	VY	분말벌크

- ⑫ 총중량 : 운송용 포장증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합계를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2자리(3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기(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을 제외함)>
- ⑬ 총용적 : 운송용 포장을 포함한 물품의 용적을 CBM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3자리(4자리에서 반올림) 표기
- ⑭ 특수화물코드 : 위험물품(IMDG위험물품코드), 동물검역대상(QA), 식물검역대상(QP), 보냉(온)물품대상(RF)인 경우 기재하고, 복수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전부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NO 기재

* IMDG코드(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단위	내용	단위	내용
1.1	대량폭발 위험이 있는 화약류	4.1	자연발화성 물질
1.2	대량폭발하여 무시한 비산위험이 있으나 폭발효과가 적은 화약류	4.2	자연발화성 물질
1.3	대량폭발하여 화재위험이 있으나 폭발효과가 적은 화약류	4.3	물과반응하여 인화성 기체를 발생하는 물질
1.4	위험이 없는 화약류	5.1	산화성 물질
2.1	인화성 고압가스	5.2	유기과산화물
2.2	비인화성 고압가스	6.1	독물
2.3	독성 고압가스	6.2	전염성 맹독물
3.1	저인화점 액체(인화점 -18°C 미만)	7	방사성 물질
3.2	중인화점 액체 (인화점 -18°C ~ 23°C 미만)	8	부식물질
3.3	고인화점 액체 (인화점 23°C ~ 61°C 미만)	9	유독성 물질, 기타 위험물

♠ 부산지방해양수산청(www.portbusan.go.kr)에서도 위험물코드확인 가능

<http://www.portbusan.go.kr/?id=port0303>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Windows ...

항만물류 PORT-MIS/EDI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정보

주요민원안내 항만운영정보 PORT-MIS/EDI 정보 도선정보

PORT-MIS/EDI 정보 항별접안선박 통계/코드

HOME > 항만물류 > PORT-MIS/EDI 정보 > 통계/코드 < 뒤로 | 앞으로 > | 로그인 |

통계/코드

부산항 자료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선박입출항통계

- 입항선박통급별 선박입출항통계
- 입항선박 선박용도별통계
- 외항선박 지역별 선박입출항통계
- 특정 국가 선박종류별 입출항통계
- 내항선 특정국내OD별입출항통계
- 부두별 선박입출항통계

화물통계

- 수출입화물 지역별 화물수송 통계
- 부두별 화물수송 통계
- 외항컨테이너화물지역별수송통계

컨테이너통계

- 컨테이너수송 실적 통계
- 컨테이너수송 지역별수송 통계
- 부두별 컨테이너수송 실적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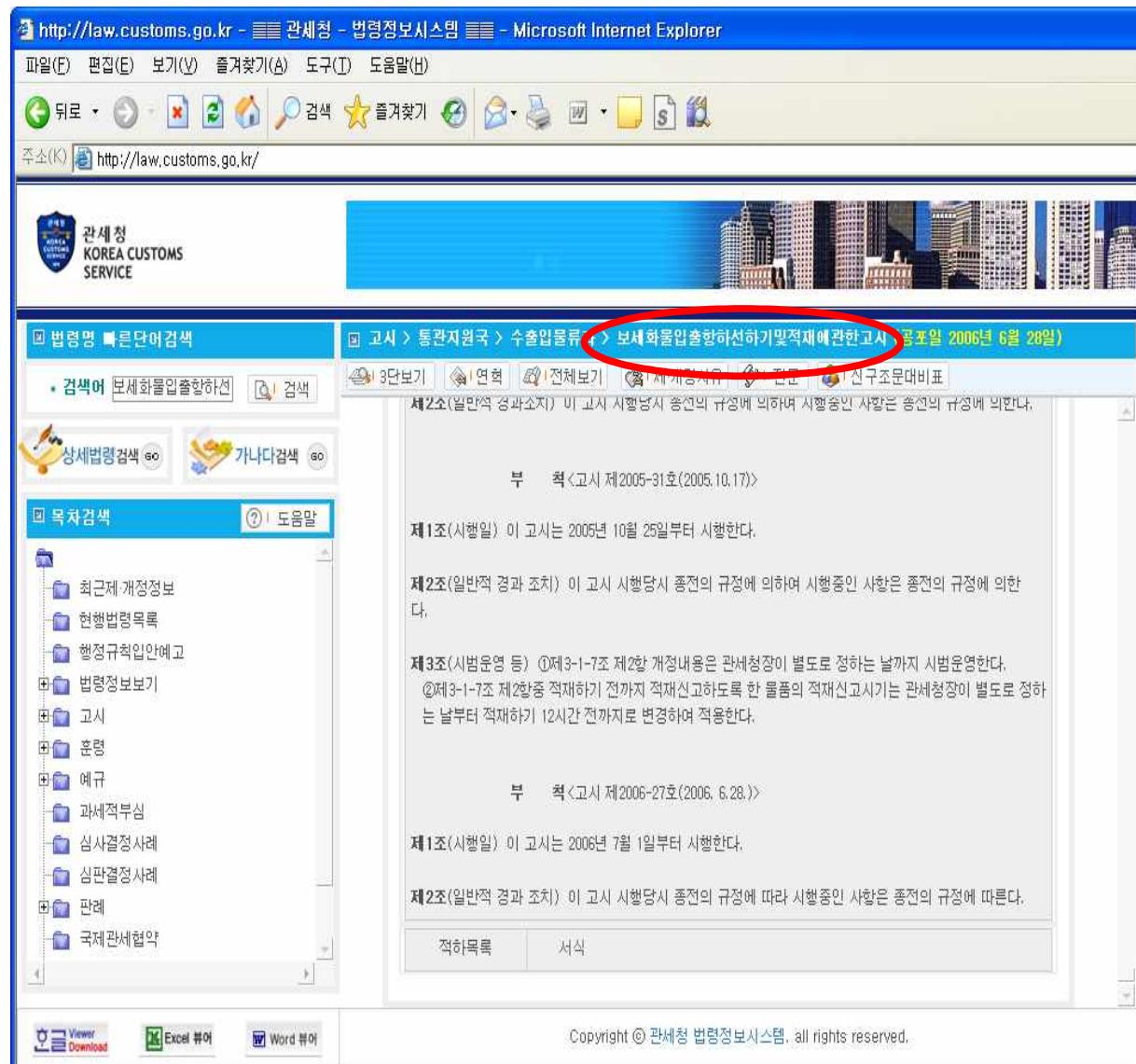
코드

- 선박제원 조회
- 업체 조회
- 선박용도코드 조회
- 국가코드 조회
- 항구코드 조회
- 항만시설코드 조회
- 화물중속코드 조회
- 위험물코드 조회
- 기관통계분류
- 국내항통계분류
- 지역통계분류
- 화물품목통계분류
- 국내항간거리통계분류
- 컨테이너유형코드조회
- 선사코드조회
- 보세장치장코드조회
- 포장종류맵핑코드조회

전국항만통계

- 전국항만 입항선박통급별 선박입출항 통계
- 전국항만 외항선박 지역별 선박입출항 통계
- 전국항만 수출입화물 지역별 화물수송 통계
- 전국항만 컨테이너수송 실적 통계

♠ 적하목록기재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
(<http://law.customs.go.kr>)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의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음



The screenshot shows the Microsoft Internet Explorer browser displaying the Korea Customs Service Law Information System.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he 'General Order on Customs Clearance and Release of Imported and Exported Goods' (2006-6-28). The title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is circled in red. The page includes a sidebar with links like '법령검색', '목차검색', and various document download options (Viewer, Excel 뷰어, Word 뷰어).

(2) 적하목록 제출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하목록을 아래의 시기까지 선박입항 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 한다.

(화물구분 :)

구 분	제 출 시 기	비 고
중국, 일본 등 근거리	선박 입항 시까지	
기 타	입항 24시간 전까지	법 제135조제2항

1)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용선선사” 라함)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 자료를 “운항선사” 가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운항선사” 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적하목록 제출 이후 다음의 경우 당해물품 하선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①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 ② 선박의 고장 또는 컨테이너고장 등으로 화물 등의 주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 ③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 확인 후 계약됨에 따라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 ④ 적하목록 제출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로 접수마감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적하목록의 일부
- ⑤ 선적지의 화물정보가 지연제공되는 등 착오로 누락된 적하 목록의 일부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선이 필요한 경우

적하목록 제출 및 심사에 따른 전자문서 처리상태 표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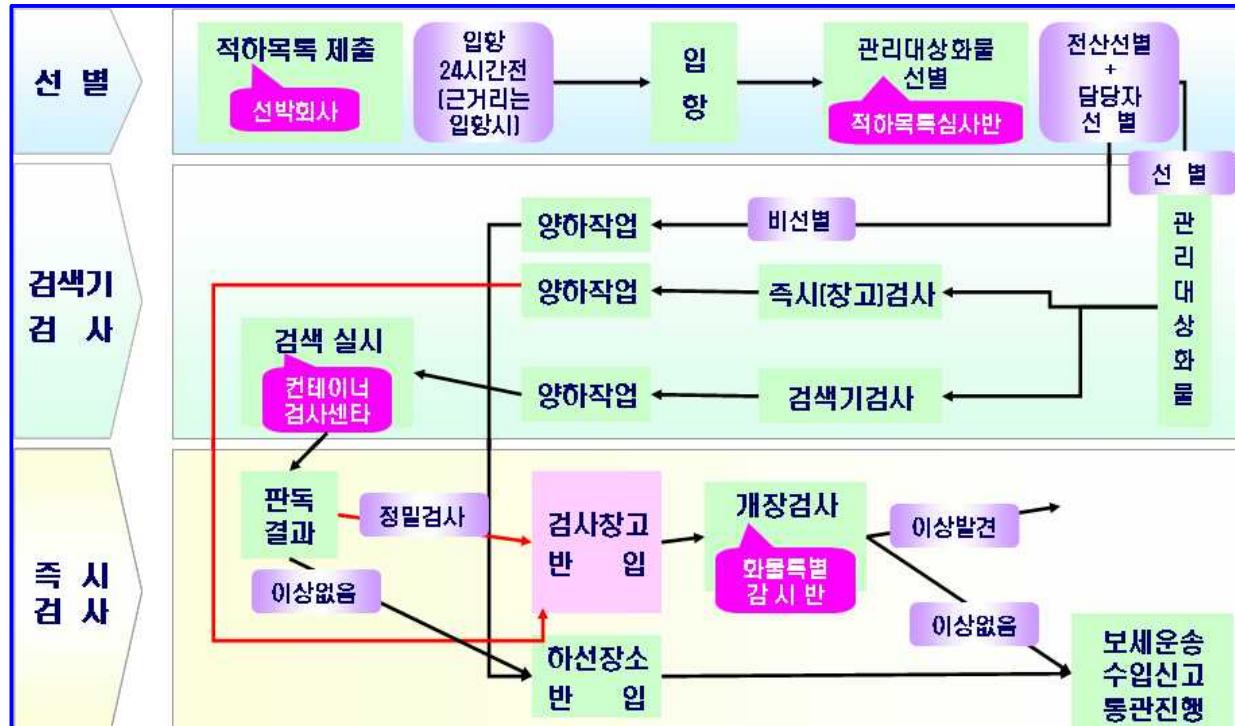
구 分	세관화물정보시스템(세관)	적하목록취합시스템(선사등)
1차~2차전송	보완증	1차전송, 2차전송
운항선사 제출완료	접수마감	보완마감
세관에서 심사완료	심사완료	선별마감

2절. 적하목록 심사(관리대상화물 선별) - 화물검사과

(1) 세관장은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는 적하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한하며,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의 오류여부는 적하목록 접수단계에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 1) 적하목록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공동배선의 경우 용선선사별 적하목록 누락여부와 혼재화물 적하목록의 누락여부를 포함)
-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을 해당 여부
-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리대상화물 선별업무 흐름도 ●



3절. 적하목록 수정 및 취하 신고 - 화물검사과

(1) 수정신고

-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적하목록을 제출한 이후 세관장이 심사 및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기 전에 그 기재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취하신고

- 선박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하목록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4절. 적하목록 정정 - 통관지원과

- (1)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정신청 관할지세관 체크기능 부여 〈08.5.14 시행〉

- 적하목록 정정신청 전자문서를 접수 Gateway에서 보세화물의 현재 관할지 세관과 정정신청세관을 확인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오류반려함
- 세관안내 : 적하목록 정정신청시 관할세관을 체크하여 ①당해물품 장치세관 ②보세운송 도착지세관 ③적하목록 제출세관 우선순으로 적용함
- 오류메시지 : “00세관으로 정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 적하목록정정신청은 다음 과호의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1) 하선결과 보고서 및 반입결과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완료 의일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의 사유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실무에서는??

- 적하목록정정 시기 : 적하목록 “심사완료” 이후 선박회사 전산화면에서는 “선별마감”
- 정정신청권자 : 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기본구비서류(서류심사대상)
 - ① 적하목록정정신청서(2부)
 - ② 사유서
 - ③ 해당B/L
 - ④ INVOICE
 - ⑤ PACKING LIST
 - ⑥ MANIFEST

4)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의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산물(예: 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 ②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 ③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세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 ④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 ⑤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적하목록 정정 자동수리제 도입 <08.3.5 시행>

심사실의이 없거나 전산으로 체크가 가능한 항목의 정정신청건은 전산 자동수리

- 컨테이너크기/유형 등 9개 항목 심사없이 자동수리
- 총중량/ 포장개수 등 18개 항목 전산체크후 자동수리
-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정정기간 경과건은 자동수리 배제

EDI전송으로 정정이 가능한 경우

구 분	EDI정정	서류심사	비고
수량, 중량, 운항정보 정정	○	○	
컨테이너 정정	○	○	
B/L주가 및 삭제	○	○	하선이상보고
품명정정	X	○	
기간경과(입항후 60일 이후)후 정정	X	○	
수하인, 통지처, 송하인 정정	X	○	

→ 서류제출대상건이라도 EDI전송 후 서류제출한 건은 서류접수시 EDI처리가능

적하목록 수하인 정정시 구비서류

구분	변경 사유별	구비서류	비고
1	적하목록 입력오류	선사등의 확인서, 전후B/L사본	
2	선적지의 전송오류 또는 O B/L재발급등	오류: 선사등의 확인서, 관련전문, 전 후 B/L사본 기타: 선사등의 확인서, ORIGINAL B/L OR L/G원본	
3	SURRENDER B/L (SEAWAY BILL)	선사 등의 확인서, 관련전문, 전후 B/L사본(SURRENDER B/L 사실확인내역 또는 입증자료 첨부)	

<과태료부과대상>

1. 하선후 B/L주가
2. 품명정정
3. 기간경과(입항후 60일 이후에 정정)

*** 적하목록 정정신청시 체납과태료 안내메시지 통보 〈08.5.14 시행〉**

- 적하목록 정정신청시 당해 선사(항공사), 포워더 등으로 징수시스템을 조회하여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오류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체납안내메시지 전송(과태료 세부내역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있음” 정보만 안내함)
- 오류메시지 : “적하목록제출관련 체납과태료가 있습니다”

5절. 하선신고

(1) 정의

- 1) 하선은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에 의한 하역절차중 본선에서 물품을 양륙하여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행위를 말함 (하역=하선+적재)
- 2) 하선장소는 본선에서 물품이 양륙되어 최초로 반입되어 지는 장소를 말함
- 3) 하선신고제도는 적하목록에 등재된 화물이 국내에서 통관, 반송, 환적되기까지의 세관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지 않고, 보세구역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어 통관과 환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결고리와 물류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음
- 4) 선사의 하선신고를 통해 하역 등이 하역, 보관, 운송 계획을 세우고, 물류의 안정 배분을 통해 전체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 것임

(2) 신고 주체

- 1) 물품을 적재하여 양륙할 화물이 있는 모든 선사 (적하목록은 운항선사가 일괄 제출하지만 하선신고는 양륙할 화물이 있는 모든 선사가 하선신고를하게 됨)
- 2) 위임을 받은 하역회사도 가능 (실제 하역회사가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하선신고 시기

- 1) 물품 “하선 전” 까지 하면 됨
- 2) 적하목록 제출시점에 하선신고 준비가 된 경우 적하목록과 같이 동시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음

(4) 하선신고 내용

-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별지9호서식(작성요령)
- 3) M B/L단위로 하선물품 구분코드(2자리)+보세구역부호(8자리)

ID: 입항전수입신고수리물품중 하선 즉시 차상반출하는 물품

SD: 입항전수입신고수리물품중 하선장소 장치후 반출하는 물품

IT: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물품중 하선 즉시 차상반출하는 물품

ST: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물품중 하선장소 장치후 반출하는 물품

GD: 하선장소장치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통관되는 물품

GT: 하선장소장치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보세운송되는 물품

(5) 특수한 하선신고 (입항전수입신고 및 보세운송)

수입신고/ 보세운송	수입신고 반입장소/ 보세운송출발지	하선신고 구분부호	하선신고 시 하선장소	비고
수입신고	XXX46000	n/a(상관없음)	n/a	n/a
	부두직		하선신고의 하선장소와 수입신고 서의 반입장소 동일여부 체크	하선신고 접수불가
	통관대상			
보세운송신고	XXX46000	n/a(상관없음)	n/a	n/a
	부두직		하선신고의 하선장소와 보세운송신 고의 출발지부호와 동일여부 체크	하선신고 접수불가
	통관대상			
수입신고수리	XXX46000	ID만 허용	n/a	n/a
	부두직	n/a	하선신고의 하선장소와 수입신고 서의 반입장소 동일여부 체크	하선신고 접수불가
	통관대상			
보세운송 신고수리	XXX46000	IT만 허용	보세운송 신고번호 자리수 체크(20자리)	하선신고 접수불가
	부두직	n/a	하선신고의 하선장소와 보세운송신 고의 출발지부호와 동일여부 체크	하선신고 접수불가
	통관대상			

- ★ 재래부두의 경우 하선전 보세운송수리(입항전 수입신고수리) 건은 하선 계획을 IT(ID)만 입력할 수 있음(다른 하선계획(GT, GD 등)을 입력할 경우 하선신고 오류 "입항전수입통관(하선전보세운송) 건입니다" 오류 메시지 전송)
- ★ 부두직통관대상 CY의 경우 하선전 보세운송신고(입항전 수입신고) 건은 보세운송 출발지 코드(수입신고 반입예정코드)와 하선 코드를 비교하여 틀릴경우 하선신고 오류
- "입항전 수입통관 장소(하선전 보세운송 출발지)와 하선장소가 상이합니다" 오류 메시지 전송
- ★ 오류 발생으로 민원인 문의시 조치사항(하선전 보세운송도 마찬가지임)
1. 재래부두로 입항전수입신고 된 경우 => 하선신고를 ID하였을 경우 오류미발생
 2. 터미널로 입항전수입신고 된 경우(실제 다른 터미널로 하선)
 - 수입신고 취하 후 하선신고
 - 수입신고 취하 불가능할 경우 → 해당 건 하선신고를 ID+수입신고된터미널코드 → 수입신고취하 후 하선정정(또는 하선신고 장소로 반입 후 반출)
- * 참고(하우스비밀 2건 이상 건에 재래부두로 입항전수입신고 한 경우)
1. 하선신고시 ID+수입신고번호로 신고할 수 없음(수입신고번호가 2개 이상임으로 전산상 불가능)
→ 해당건 하선신고 ID+터미널코드 전송 → 해당 터미널로 반입 후 반출(또는 세관 직권 반출)
- ★ 정확한 하선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2006.09.04시행)

부산항 부두 직통관 가능 보세구역 (2008.10월 현재)

연 번	보세구역코드	보세구역명	비고
①	03012219	대한통운 감만터미널 (대한통운 + 허치슨)	
②	03012226	한진해운 감만터미널 (세방 + 한진)	
③	03012240	한국허치슨 자성대터미널	
④	03012257	우암터미널	
⑤	03012312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⑥	03077016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⑦	03077023	한진해운감천터미널	
⑧	03077102	부산신항만터미널	
⑨	03086232	부산신항만(주)자유무역지역CFS	

(6) 하선장소

- 1) 컨테이너화물 :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CY (CFS포함)
- 2) 냉동컨테이너화물 :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CY를 원칙으로 하되 화주가 냉동(장)창고를 임고를 원하는 경우 냉동(장)창고
- 3) 산물(벌크) : 부두 내 보세구역
- 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7) 하선장소 반입관련 규정

1) 하선장소 반입기한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2-1-10조(하선장소 물품반입) 제1항
: 하선신고를 한자는 하선신고서 수리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내
에 당해 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

구분	화물	하선장소 반입기간	비고
1	컨테이너 화물	3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벌크화물)	10일	

2) 기한경과 시 과태료 처분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적발	2차적발	3차적발 이상
제277조 제2항제2호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최근1년간 10회이하	최근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1년간 20회초과
	하역통로 및 장소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하선장소 반입기간 경과			
	①미반입 일자별			
	- 3일 이내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3일 초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②미반입 컨테이너			
	- 5개 이하 미반입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5개 초과 미반입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③컨테이너 화물은 ①,②항중 적은 금액을 적용, 별크화물은 ①항 적용			

3) 기산시점

- 04.8.01이전에는 하선신고 수리일 기준이었으나 ‘04.8.01이후에는 적하목록에 기재된 입항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선박 접안 이동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접안일”을 기준으로 함

4) 하선장소 물품반입기간 준수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 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하선반입기한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8) 하선신고 심사사항

- 1) 적하목록과 일치여부
- 2)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
- 3) 관리대상화물 (즉시검사화물) 의 하선장소 변경

(9) 하선결과 보고

- 1)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완료 후 익일까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의거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세관장이 하선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적하목록 정정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적하목록 정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3) 선사는 하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하목록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4) 검수(검정)업자가 제출한 하선결과이상보고에 의하여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지만 컨테이너 추가, 삭제의 경우는 선박회사가 EDI 또는 서류로서 신청하여야 정정이 가능함



2장. 해상수출의 적하목록

● 수출화물관리의 개요



● 적하목록 전송과정



자체프로그램

(KLNET) (MFCS : ManiFest Consolidated System, KTNET에서 운영)

- 포워더와 선사(운항선사, 용선사)는 각 업체의 B/L을 작성하여 KTNET이 운영하는 CTRADEWORLD의 MFCS로 전송함
- 운항선사는 전송된 B/L들을 확인하여 취합된 적하목록을 전송하는데, KTNET은 완전하지 않게 취합된 B/L에 대하여 오류 메세지를 띄움
- 오류통보를 받은 운항선사는 우선으로 용선사와 포워더에게 오류통보를 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오류를 수정하여 재전송 함

취합한 운항선사는 마감전송을 함

1절. 출항적하목록 제출

(1) 수출(반송물품 포함)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적하목록 제출 의무자)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적재신고는 물품이 선적지 항만 내 장치된 후 적하목록 기재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출항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아래의 시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구분:E)

구 分	제 출 시 기	비 고
미국행 해상화물 (미국 경유화물 포함)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기타 화물	적재하기 전까지	법 제1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58조
①중국, 일본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화물 ②벌크화물, 공컨테이너, 환적화물	출항 의일 24시간까지	

(3) 공동배선의 경우

- 운항선사는 용선사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물품목록 자료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혼재화물의 경우

- 운항선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미국행 해상화물과 기타 해상화물이 혼재된 경우

- 미국행 해상화물은 1차 마감전송(화물특성코드 입력)하고 기타 해상화물은 적재전 마감

※ C-TRADE WORLD 수출 적하목록 제출화면

○ 단계별 전송체계

단계별	주요내용	비고
1차마감	미국행 화물 및 미국행 이외의 1차 마감전송 시 사용	
적재전마감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등 적재전신고대상 화물이 있는 운항선사가 사용	
최종마감	적재 전 마감 후 또는 출항의일 제출대상 화물 제출 후 전송	

(6) 적하목록제출순서

- 적하목록제출→적하목록오류검증→1차마감→적하목록제출→적재전마감(미국행 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1차마감전송으로도 가능, 적재전 화물이 없는 경우 생략)→적하목록제출→최종마감전송

(최종마감전송을 하지 않은 건은 관세청전산시스템에서 출항의일 24시에 강제마감함)

(7) 전송상태별 B/L주가/수정/삭제 가능여부

구분	미국행	적재전신고대상	기타화물
1차예비전송상태	주가/수정/삭제 가능	주가/수정/삭제 가능	주가/수정/삭제 가능
1차마감전송전	주가/수정/삭제 가능	주가/수정/삭제 가능	주가/수정/삭제 가능
2차예비전송상태	주가/수정 가능 (적재24시간전까지만)	주가/수정 가능	주가/수정 가능
적재전마감전송전	주가/수정 가능 (적재24시간전까지만)	주가/수정 가능	주가/수정 가능
3차예비전송상태	×	×	주가/수정 가능
최종마감전송전	×	×	주가/수정 가능

(8) 제출현황 화면에서의 입력/수정가능 시점

단계별	입력/수정가능 시점	비고
1차전송	취합 중, 1차오류통보, 1차접수통보	
적재전전송	1차마감접수통보, 1차마감오류통보	
3차전송	2차마감접수통보, 2차마감오류통보, 3차접수통보, 3차 오류통보일 경우에만 가능	

【 조사의뢰가 되는 경우 】

☞ 출항적하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13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관세법 제276조제2항 제2호에 의거

조사의뢰후 처벌된다.(동법279조1항에의한 양벌규정 적용)

(출항적하목록 미제출)

관세 법

제136조

②선장 또는 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후 7일의 범위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6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수출신고 수리전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경우

- 관세법 제14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써 관세법 제276조제3항 제3호에 의거

조사의뢰후 처벌된다.(동법279조1항에의한 양벌규정 적용)

(내국물품 무단적재)

관세 법

제140조

④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있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6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적하목록을 전송하게 되면 “출항이후 면허된 건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와 함께 해당 적하목록이 누락되게 된다.
- 이때 수출이행내역은 선적완료에 “N”으로 표기되므로 수출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을 방문하여 누락된 출항적하목록(해당 B/L)을 추가해야 한다.

2절. 출항적하목록 정정

- (1)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세관장이 적하목록을 심사완료한 이후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적하목록정정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EDI전송으로 정정이 가능한 경우

구 분	EDI정정	서류심사	비고
수량, 중량, 운항정보 정정	○	○	
컨테이너 정정, B/L삭제	○	○	
B/L주가(오류내역 있는 경우)	○	○	오류상세 내역확인
B/L주가(오류내역 없는 경우)	X	○	
기간경과(출항후 45일 이후)후 정정	X	○	
송하인 정정, 품명정정	X	○	

→ 서류제출대상건이라도 EDI전송 후 서류제출한 건은 서류접수시 EDI처리가능

<과태료부과대상>

1. B/L주가(오류내역 없는 경우)
2. 기간경과(출항후 45일)
3. 품명정정

☞ 실무에서는??

- 적하목록정정 시기 : 운항선사가 출항적하목록 최종 마감전송한 뒤
세관장 “승인” 이후
- 정정 신청권자 : 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기본구비서류(서류심사대상)
 - ① 출항적하목록정정신청서(2부) ② 사유서 ③ 해당B/L사본
 - ④ 수출신고필증 ⑤ MANIFEST

1) 적하목록 공통내역(운항정보) 정정

- 선박국적, 선박호출부호, 선박명, 출항일자, 항차(항차를 제외한 4가지 항목은 정정 후 내역이 출항보고서와 일치할 경우에만 자동수리)

2) B/L 내역 정정

- 총용적, 포장종류부호, 컨테이너내역 정정/추가/삭제

3) B/L 수출신고내역의 중수량 정정

- Master B/L에 대한 수출신고내역의 중수량이 감소되는 경우 자동수리,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의 중수량과 일치할 경우 자동수리 (House B/L 자동수리 제외)

4) 적하목록 정정기한 경과건 또는 정정신청서 제출 세관이 적하목록 제출세관과 상이한 경우 등 자동수리 제외

※ 세관오류통보조회

수출(MFCS) 수출 적하목록 세관 오류통보 조회(EMEA)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				
기간 [2006-08-29 ~ 2006-09-28] MRN [] <small>*MRN 입력생략 가능</small> 오류 건수 : 13건				
삭제	No.	MRN 출항일자	전송차수 MASTER B/L No. CONTAINER No.	HOUSE B/L No. 수출근거번호 예러내용
<input type="checkbox"/>	1	06CMALME625 2006-09-13	1	NO HOUSE 제출된 수출신고번호가 수출신고서에 없습니다.
	2	06CMALME667 2006-09-28	1	609EX06101 (확인)(분활아님)선적포장개수가 통관포장개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	06CSKAK2399 2006-09-24	1	014100600969372 (확인)(분활아님)선적포장개수가 통관포장개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4	06CSKAK2399 2006-09-24	1	014100600969365 (확인)(분활아님)선적포장개수가 통관포장개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5	06DSTS2B2833 2006-09-12	1	M B/L의 총포장수량과 수출신고 포장수량합을 확인하시오
		06DSTS12102	1	

→ 오류내역 중 (확인)이외의 오류내역(보완, 확인이나 보완이 없이 오류메세지만 있는 경우)이 있는 B/L은 해당 B/L이 누락된 것이므로 B/L이 제출될 것이 맞는 경우에는 해당 B/L주가신청을 관할지 세관(통관지원과)으로 하여야 함

※ C-TRADE WORLD 수출 적하목록 정정화면

수출적하목록 정정화면

수입적하목록 | 수출적하목록 | 입항보고 | 출항보고

MRN	/	입 련 번 호	2006-09-28 09:56	M B / L
신청서관 / 과		제 출 일 시		M/L New
양 류 항		정정구분 -	-B/L Type -	-화물구분 -
포워더 부 호		[M/R/L상정]		
장치위치		M B/L상정		
포장개수/단위		M R/L 추가		
총 중 량	KG	M D/L 삭제		
총 용 적	CBM	[포장구분]		
컨테이너 출개수		[수하인]		
H B / L 출개수		[수하인]		

Container Info License Info Single List

작업구분 추가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규격

불인번호 1 / ?

전전전 컨테이너번호

정정사유

신규 저장 삭제 뒤로

b/I정정처리화면

컨테이너, 수출신고번호정정처리화면

수출적하목록 정정화면

수입적하목록 | 수출적하목록 | 입항보고 | 출항보고

MRN	/	입 련 번 호	2006-09-28 09:56	M B / L
신청서관 / 과		제 출 일 시		M/L New
양 류 항		정정구분 -	-B/L Type -	-화물구분 -
포워더 부 호		화물특성		
장치위치		품 명		
포장개수/단위		정정사유		
총 중 량	KG	[수하인]		
총 용 적	CBM	[수하인]		
컨테이너 출개수		[통지처]		
H B / L 출개수		[통지처]		

Container Info License Info Single List

작업구분 추가

수출신고번호

선행개수/단위

선행 중량

등사포장구분/개수/단위

정정적 수출신고번호

정정 시 유

【오류발생시 처리요령】

- 포워더 및 용선사는 B/L을 전송한 후 KTNET이 부여한 ID로 CTRADEWORLD로 들어가서 오류내역을 확인하고 오류가 발생하였으면 다시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재전송 하여야 함
(정정하여 재전송하였으나 다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수시로 오류내역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포워더는 운항선사가 최종마감하기 전까지 오류확인 후 정정해야함

※ 주의할 점

B/L을 전송한 후에는 각 업체에서 직접 오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운항선사의 유선통보에만 의존하여 B/L이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오류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세관 오류내역 확인화면

항공사		오류내역	
M AWB NO	H AWB NO	수출신고(컨테이너)번호	화물운송주선업자
HJSC HANJIN SHIPPING CO	H B/L의 포장종류부호를 확인하시오		MTIX MASSTAR TRANSPORTS INC.
COSU CHINA OCEAN SHIPPI	(확인)(분활마님)선적포장개수가 통관포장개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NO HOUSE		
HJSC HANJIN SHIPPING CO	(확인)(분활마님)선적포장개수가 통관포장개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RCSL ROHLIC KOREA CO.,
YMLU YANGMING MARINE TR	제출된 수출신고번호가 수출신고서에 없습니다.		
YMLU YANGMING MARINE TR	(확인)(분활마님)선적포장개수가 통관포장개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SSGM FAIRCON LINE CO.LTD
HJSC HANJIN SHIPPING CO	(보완)Master B/L의 포장개수가 House B/L의 포장개수 합보다 큽니다		HLKX HELLMANN WORLDWIDE LOGISTICS
HJSC HANJIN SHIPPING CO	(보완)Master B/L의 포장개수가 House B/L의 포장개수 합보다 큽니다		UTKX UTI KOREA CO.,LTD
HJSC HANJIN SHIPPING CO	M B/L의 수출신고번호 check digit를 확인하시오		UTKX UTI KOREA CO.,LTD

3절. 출항적하목록 전송오류 사례

1. B/L누락

연번	진행 내역	오류 발생	오류 사유
1	-운항선사에서 MRN 번호를 변경하고 각 용선사에 통보 -특정 용선사에서는 변경된 MRN을 전달받지 못하고 변경전 MRN으로 B/L 전송	특정용선사에서 변경전 MRN으로 전송한 B/L은 운항선사의 최종마감전송에서 누락	특정 용선사에서는 출항 B/L을 MFCS상에 전송하고 오류내역(계속 취합증 메시지에 대한 내역 파악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치 않고 세관오류만 확인함
2	포워더는 B/L을 제출하였으나 선사가 B/L을 누락	선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H B/L을 누락시킨거나 제출한 H B/L에 대한 M B/L을 제출하지 않아 B/L이 누락	선사에서는 취합된 H B/L을 확인하고 M B/L을 제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B/L을 제출하지 않으면 포워더가 제출한 H B/L도 누락됨
3	마감전송 후의 B/L제출	선사에서는 M B/L을 제출하였으나 포워더가 B/L을 최종마감 후 제출하여 누락	포워더는 운항선사에서 최종마감전송 전에 H B/L을 제출하여야만 B/L이 누락되지 않음에도 담당자의 실수 등의 이유로 제때에 B/L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
4	운항선사의 최종마감전송	용선사들의 마감전송 전에 운항선사에서 최종마감한 경우	용선사들이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있는 도중에 운항선사의 담당자가 실수로 최종마감⇒B/L누락
5	B/L제출후 관세청 전송 과정에서 누락	MFCS에서는 취합되었으나 관세청오류내역에 해당하면 B/L이 누락	MFCS상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관세청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취합되었더라도 관세청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오류내역이 있는 B/L은 누락됨

2. 중량·수량 또는 용적 기재 오류

연번	B/L 기재 내역	적하목록 제출(오류)	오류 사유
1	제출한 B/L의 수량, 중량과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량, 중량의 불일치	선사 등에서 수출신고필증내역이 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B/L 제출	수출신고필증의 수량, 중량이 정정된 경우에는 B/L도 수출신고내역에 맞게 정정한 후 제출하여야 함
		수출신고내역과 B/L의 내역이 일치하나 적하목록작성 담당자가 실수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의 내역을 입력	이미 사용한 수출신고필증을 입력하면 B/L이 누락되며, 사용하지 않은 필증을 사용하면 B/L은 제출되지만 제출 후 정정하여야 함
2	동시포장수출	수출신고필증이 동시포장인 경우 B/L내역과 일치하나 적하목록작성자가 B/L기재사항을 잘못 기재	동시포장건은 동시포장여부, 동시포장개수, 수량, 중량을 형식에 맞게 기재하여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 수출신고필증 분할 사용 1개의 수출신고필증을 여러번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분할여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제출에는 이상(오류)이 없음			
3	수출신고내역정정	수출신고내역이 정정되어 B/L이 정정되는 경우 정정순서를 잘못 진행함으로써 오류 발생	수출신고내역이 줄어드는 경우는 B/L부터 정정해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수출신고내역이 늘어나는 경우는 신고필증부터 정정해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3. 송화인·수하인 또는 통지처 기재 오류

연번	B/L기재 내역	적하목록 제출(오류)	정정여부
1	출항 B/L상의 송하인	B/L에 기재되는 송하인은 수출 신고필증상의 수출자가 되나 다른 회사명을 기재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적하목록도 정정 가능
2	수입화물이 입항하여 재수출(중계무역)되는 때 의 출항 B/L상의 송하 인	반송면장을 발급받은 입항화 물의 화주가 출항 B/L의 송 하인이 되나 다른 회사명을 기재	반송면장을 발급받은 화주로 송하인 정정 가능
3	송하인과 수하인	송하인과 수하인을 담당자가 바꾸어 제출	수출신고필증내역과 일치하 면 정정 가능

4. 컨테이너관련 오류

연번	B/L기재 내역	적하목록 제출(오류)	정정방법 등
1	컨테이너 번호, 규격, 봉인번호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선사 가 제출한 컨테이너 내역과 포워더가 제출한 컨테이너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M B/L과 H B/L의 컨테이너내역 이 같이 않으면 B/L 제출시 오류 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오류를 고 쳐 전송
2	컨테이너 규격의 오류	전산에서 인정하는 규격을 입력하지 않음	전산에서 받아 들이는 규격으로 표시
3	컨테이너 번호 (MB/L, H B/L)	M B/L의 컨테이너 번호를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경우	오류를 치유하지 않고 전송하면 마감 후 정정하여야 하며 H B/L 이 있는 M B/L의 컨테이너 정정 은 EDI로 정정되지 않음
		H B/L의 컨테이너 번호를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경우	H B/L의 컨테이너 내역은 EDI로 정정 가능

5. 기타오류

연번	B/L 기재 내역 등	적하목록 제출(오류)	정정방법 등
1	ABCD050500271 ABCD050500272 ABCD050500273	ABCD05050027-1 ABCD05050027-2 ABCD05050027-3	특수문자변환오류로 해당 B/L 전송 누락
2	타세관에 제출할 적하목록을 제출	타세관에 제출하여야 할 적하목록을 부산세관에 제출	타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 확인 후 중복제출되었음이 확인되면 B/L 및 MRN삭제
3	출항일자보다 수출신고면허 일자가 늦은 경우	출항일자보다 늦게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B/L의 전송	B/L을 전송하여도 관세청에서의 오류사항에 해당되어 B/L이 누락됨 (선사등에서 원천적으로 수출무단적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6. 변환오류 대상

(1). EDI에서 사용 불가능한 문자를 사용할 경우

=> ~ , ` , @ , # , \$, ^ , | , [,] , { , } , _ , TAB , CR(Enter) 등의 문자가 포함될 경우

(2). 날짜세그먼트(DTM)에 날짜형식을 틀리게 기재한 경우

=> 2005401 (자리수이상) 20051401 (월이상) 20050432 (일이상)

(3). 숫자세그먼트(MOA, MEA)에 숫자가아닌 문자가 기재될 경우

=> .1 (0.1이라고 기재해야함)
100,000 (1000000이라고 기재해야함)

(4). LOOP 횟수초과오류

=> EDI문서구조에서 정하는 특정세그먼트의 LOOP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5). 필수기재항목 누락 오류

=> EDI문서구조에서 정하는 필수기재항목을 누락한 경우



3장. 환적화물의 적하목록

● 용어의 정의

□ 환적

- “환적” 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 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싣는 것을 말한다.
- 이는 기존의 “이적” 이란 말과 같은 용어로서 “통과화물”, “T/S(Transshipment)화물”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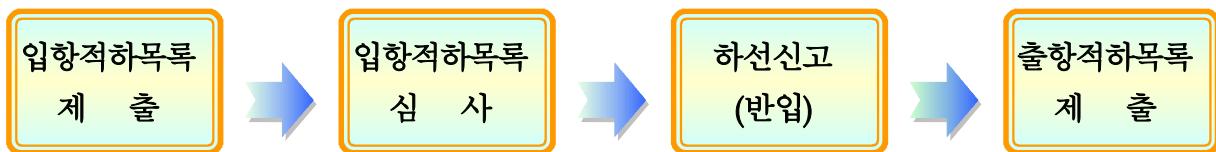
□ 내국환적운송 (보세운송편에서 설명함)

- “내국환적운송” 이라 함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외국무역선(기)”에 의하여 국내 개항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입항시 화물구분 영문 “I”, 화물속성 수자 “1”로 제출)

□ 복합일관운송화물

- “복합일관운송화물” 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07.6.27)

● 환적화물의 개요



1절. 입항적하목록 제출

- (1)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용선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구분 : T)

2절. 적하목록 심사

- (1) 화물관리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의 해당여부
-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 3)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절. 하역

- (1) 환적화물의 일시양륙신고는 하선신고로 갈음하고 환적화물을 하역하여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장소에 한한다.

- 1)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 2) 관세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 당해 통관장 또는 통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역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신설 2007.6.27)
- 3)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 4) 3)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반입사유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절. 반출입신고

- (1)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 반입시 반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하선 보세구역 운영인이 하선장소에 하역된 환적화물의 반출입사항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에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적화물을 하선장소에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CY에서 화물의 적출입작업을 위해 CFS로 반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환적화물을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위하여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서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신고로 보세운송을 갈음한다.(2006.07.01 시행)

5절.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등

(1)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 1)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고자하는 자는 컨테이너적출입작업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대장관리 등을 통해 적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보세구역에 대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적출입작업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환적화물의 컨테이너적출입작업은 당해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 나.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다.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 라.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한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적출입작업을 완료한 자는 작업완료 의일까지 검수 회사 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 나. 환적화물이 내장된 LCL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신고한 경우
- 다.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2-1-5조제2 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하목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세관장은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작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6절. 출항적하목록 제출

(1)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인 운항선사는 용선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수출화물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되 수출신고번호 대신 환적화물의 입항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화물구분 : R)

7절. 환적화물의 적하목록 정정

- 환적화물의 적하목록은 입항 후에는 입항적하목록 정정의 규정을 적용받고, 출항 후에는 출항적하목록 정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환적화물 적하목록	=	입항적하목록(T)	+	출항적하목록(R)
--------------	---	-----------	---	-----------

<과태료 부과 대상>

입항이후	출항이후
입항적하목록(화물구분:T)	출항적하목록(화물구분:R)
1.하선후 B/L추가	1.오류내역 없는 B/L추가
2.품명정정	2.품명정정
3.입항 60일 이후 정정건	3.출항 45일 이후 정정건

8절. 환적화물의 원상태 반출 증명서 발급

- (1) 환적화물의 원상태 반출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를 첨부한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받을 수 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 76조 규정에 의한 직접운송규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07.6.27)

9절. 환적화물운송절차에대한특례

(1) 선적하기 위한 타부두 T/S 보세운송절차 생략

① 환적화물을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위하여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제7조)

(2) FCL환적화물도 비하선장소로 보세운송 및 장치 허용

- ① 컨테이너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9조)
- ② FCL환적화물 비하선장소 보세운송절차 통보 공문 참조(부산세관 통관지원과 -3178, 2006.7.7.)

(3)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환적화물의 일괄운송절차 전국 확대

- ① 평택항과 인천항에서 인천공항세관으로만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던, SEA&AIR연계환적절차가 전국으로 확대(제11조)
 - 행상항공연계 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하선신고일부터 7일로 확대
 - SEA&AIR연계환적절차 :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절차를 갈음
- ②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된 때에는 하선장소 반입없이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고시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재수출신고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없이 출항하는 선박에 직접 적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6.27)

★ 신항 ~ 북항간 선적을 위한 T/S화물 보세운송절차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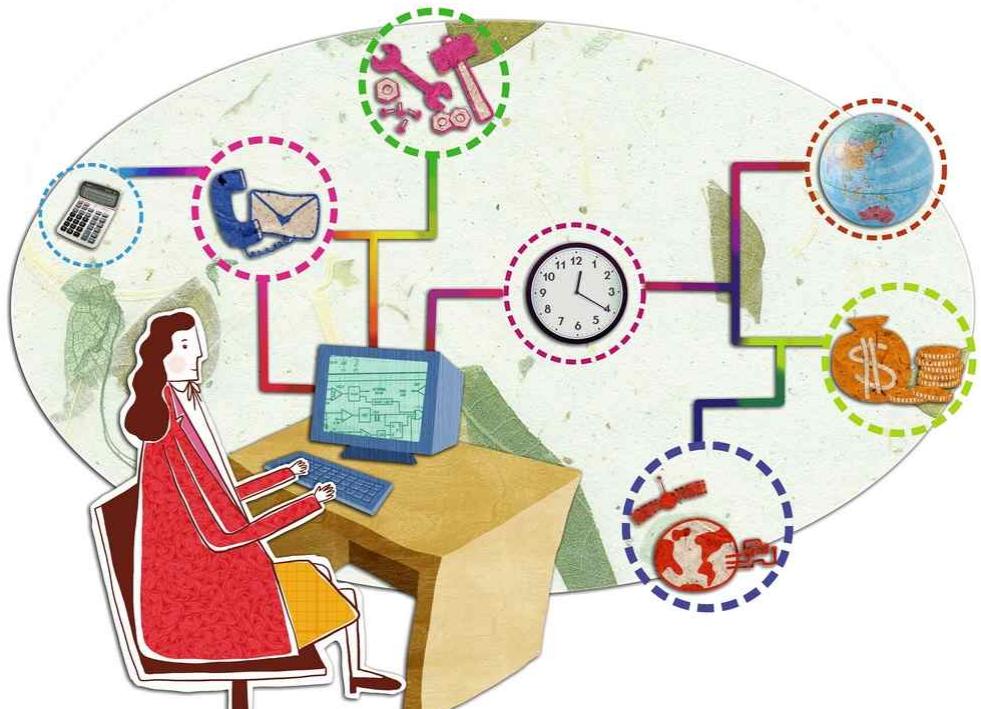
- 선사의 선적지시에 따라 보세운송 등록된 차량에 의하여 부두 및 터미널간을 이동하는 T/S에 한하며, 보관이나 작업을 위하여 ODCY 등으로 이동시에는 보세운송절차 준수

* 환적화물 규제 완화

□ ~ 97년말(규제완화이전) 환적절차 : 수입화물의 현재 처리 절차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면서 화물이동시 마다 보세운송신고, 반출입시마다 반출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적허가(현 환적신고)후 적재완료보고(선적B/L첨부하여)까지 실시

차 수	일 시	규제완화 내역
1차	(97.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두내 하선화물로 본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 환적신고 생략 ODCY하선화물은 환적신고 유지
2차	(98.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CY하선화물도 환적신고생략 컨테이너터미널의 하선반입신고 및 반출신고 생략
3차	(98. 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과화물 이적기간(30일) 폐지
4차	(01.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의 컨테이너적출입작업신고 생략
5차	(01. 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을 경유지보세구역에서도 허용
6차	(03.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적신고 생략
7차	(06.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항선박에 적재하기 위하여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운송시 적재신고로 보세운송 갈음

민원인을 위한 업무 Q&A



● 부산세관 통관지원과
(051-460-6132~6139)



I. 입항 적하목록

자주 묻는 질문 1



Q. 적하목록은 누가 작성하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A

적하목록은 선사가 Master B/L을 토대로 작성하며 혼재적하목록은 화물운송 주선업자(포워더)가 House B/L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운항선사는 자신이 작성한 적하목록에 용선선사가 제출한 적하목록, 그리고 포워더가 작성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모선단위 1건으로 취합하여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국, 일본 등 근거리 항로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전까지 제출하면 됨)

※ 적하목록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의 종괄목록으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을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 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Q. 000배가 이번 항차로 입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적하목록 선별마감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

A

이 경우는 적하목록 선별마감 후 우리세관 통관지원과에 서류제출로 적하목록 삭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입항정보 확인 후 적하목록을 삭제해 드립니다.

적하목록 삭제처리의 순서는 입항전보세운송(입항전수입신고) 취하→ 하선신고내역 삭제→ B/L 삭제→ 운항정보삭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Q. 적하목록 2차 전송 후 B/L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A

수입적하목록은 1,2차 전송이 가능하며, 1차 전송 후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2차 전송이 가능합니다.

2차 전송 후 누락된 B/L이나 오류통보 받은 B/L에 대해서는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세관에 서류제출로 B/L추가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당해물품의 “하선전”에 B/L추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하선완료 후 B/L추가신청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Q.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적하목록 정정(정정, 추가, 삭제)이 가능하며, 적하목록 정정은 장치세관》보세운송도착지세관》적하목록 제출세관의 우선순위로 정정신청하여야 합니다.

적하목록제출(하선신고)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제출지세관에 하여야 하며 반입(보세운송반입)된 경우 반입지관할세관에 정정신청하여야 합니다. EDI로 정정신청시 적하목록 정정신청가능한 세관이 아닐 경우에 오류메시지(00세관으로 정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Q. EDI로 정정신청 했는데 부분승인통보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A

선사(포워더)측에서 부분승인건으로 나타나 있는 건은 세관에서 서류제출의 필요성 등 기타의 사유로 정정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승인이 난 것에 대하여는 기각사유 확인 후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



Q. 방금 승인통보를 받았는데 정정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A

EDI 정정승인건은 그 결과가 전송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20~30분 경과 후에도 정정이 되지 않으면 세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Q. 적하목록 선별 마감되었는데 운항정보 정정이 가능합니까?

.....

A 적하목록 선별마감 후에는 운항정보 뿐만 아니라 적하목록 내용 정정이 가능합니다. 적하목록의 심사 전에는 정정이 불가하므로 “선별마감” 확인 후 정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Q. 적하목록 장치예정장소 정정이 가능한가요?

.....

A 항공화물의 장치예정장소는 정정 가능하나 해상화물은 정정 불가능합니다. 해상화물의 경우 업무 진행상 장치예정장소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하선신고 시 올바른 장치장소로 신고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



Q. B/L을 추가하려고 하니 이미 선별마감 되었습니다. 하선작업도 끝났는데 B/L추가가 가능한가요?

.....

A 적하목록 선별마감이 끝나면 B/L추가가 가능합니다.
통상 하선신고된 상태에서 실제 하선작업이 끝나기 전에 B/L을 추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하선작업 완료 후 B/L을 추가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①정정신청서 2부, ②사유서, ③수하인의 사업자등록증(번호), ④B/L 사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Q. M.B/L 한건에 H.B/L 한건이 신고 된 화물을 보세운송하여 도착지 보세구역에 반입까지 되었는데 선적지에서 H.B/L이 한건 더 있다고 해서 추가하려 합니다. H.B/L을 추가할 수 있나요?

.....



보세운송 후 반입된 화물에 대한 B/L주가는 도착지보세구역 관할세관에서 하여야 하며 기존에 H.B/L이 존재하므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



Q. 체화가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정정을 하려합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체화된 물품이라도 정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체화된 물품의 적하목록은 체화를 해제 하여야 정정이 가능하므로 EDI로는 정정하실 수 없으며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Q. M.B/L만 제출하고(B/LE)입:S) 반입된 뒤 보세운송을 하여 보세운송 반입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주가 H.B/L을 추가해 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B/L 타입이 SIMPLE로 된 상태에서 보세운송을 하고 반입까지 잡은 상태에서는 H.B/L을 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B/L분할이나 M.B/L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



Q. 보세운송 신고수리되어서 도착지에 반입되었는데 반입이상보고 전송을 했다
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화물이 선적지에서 선적되지 않고 B/L만 전송한 경우입니다.
이럴 땐 B/L을 삭제해야 하나요?

.....



A 반입지창고에서 반입사고내역을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담당자의 검토가 끝나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화물은 이미 보세운송신고수가 되고 반출 → 반입(도착지보세구역)의 절차를 마친 상태이므로 진행사항의 역순으로 모든 진행상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착지세관 담당자의 확인 후 도착지 반입에 대한 삭제를 도착지세관에 신청하시고 출발지 세관에는 보세운송반출 삭제와 보세운송 취하를 신청하시고, 모든 절차가 삭제되고 나면 적하목록정정의 형식으로 B/L삭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



Q. Master B/L(Simple)로 신고된 건의 B/L type(S→C)과 송수하인을 변경하고 House B/L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정신청 하여야 합니까?

.....



A 선사와 포워더에서 같은 시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쪽 다 정정신청서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B/L type 정정, 선사→송수하인정정, 포워더→B/L 추가)

하선완료전에 정정신청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하선완료 후 신청하게 되면 House B/L추가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입항반입상태까지는 정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세운송이 이루어진 경우는 Master B/L의 B/L type정정이 불가능하여 House B/L추가할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

- ☞ Q. 1개의 M.B/L에 1개의 H.B/L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신고한 H.B/L의 일부에 대해 화주가 바꿔어 분할하려 합니다. 분할이 가능한지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B/L분할은 동일화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B/L분할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변경전의 B/L은 정정을 하고 화주가 바뀌는 건은 B/L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하선작업 종료 전 B/L 추가가 이루어져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6

- ☞ Q. 선사인데요. 포워더에서 M.B/L로만 신고된 것에 H.B/L을 추가신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B/L 타입을 'S'→'C'로 바꾸려고 신청했는데 '포워더부호를 입력하세요'라는 오류가 생깁니다. 왜 그런거죠?

.....

- A** B/L타입을 'S'에서 'C'로 바꾸려면 포워더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전산으로는 「정정 전」은 빈칸으로 두고 「정정 후」에는 포워더 부호를 입력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C'에서 'S'로 바꾸려면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사에 따라 전산 신청을 할 수 없는 곳도 있으니(전산 업그레이드 안된 곳) 그런 경우는 포워더가 H.B/L 추가하려 나올 때 서류를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7

- ☞ Q. B/L번호 정정하려는데 할 수 있습니까?

.....

- A** 목록 제출시 오타(예 : APLU3083216 → APLU3803216)를 제외하고는 바꿔는 B/L을 첨부하여 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

- ☞ Q.M.B/L을 S→C로 정정하고 H.B/L을 추가했는데 H.B/L에 하선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A M.B/L이 SIMPLE로 되어있었고, 하선신고까지 수리되어 있는 경우 선사에서 M.B/L을 CONSOL로 고치고 포워더에서 HOUSE B/L을 추가하게 되면 H.B/L 상에는 하선신고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자에게 기존의 하선신고를 삭제 신청하시고, M.B/L에 대한 하선이 삭제되고 나면 다시 하선주가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이 추가된 H.B/L에도 하선이 반영되면서 화물통관 진행정보 상에 하선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

- ☞ Q. 직하목록 제출 후 B/L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를 해야 하는데 하선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하선 전에 추가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공휴일은 예외인가요?

.....

A 우리세관(통관지원과)에서는 공휴일에도 임시개정(보세운송)을 하므로 추가하여 할 B/L이 생기면 추가서류를 구비하여 임시개정담당자에게 접수(임시개정자의 부재시에는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시고 가셨다가 공휴일이 지나서 익일 오전까지 추가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접수하시지 않고 공휴일 익일에 신청하시는 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



Q. 선사인데요. 동일한 M.B/L이 중복으로 신고 됐습니다. 이중 하나는 삭제를 해야 하는데 EDI로 가능할까요?

.....

A

M.B/L 삭제는 기본적으로 하선결과이상보고에 따라 삭제되는데 B/L이 중복 신고된 경우는 하선결과 이상보고가 없으므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1



Q. 1개의 B/L에 컨테이너가 3개인데 그 중 한 컨테이너가 검색기검사로 지정되고 다시 정밀검사로 지정되어 하선장소가 검사지정장치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컨테이너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두 컨테이너도 그 지정장치장으로 가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

A

위 경우와 같이 정밀검사로 인한 하선장소변경으로 검사를 필요치 않는 컨테이너를 검사지정장치장으로 옮겨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B/L분할주가」라는 방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 정밀검사분에 대해 검사결과가 「이상없음(자동해제 등)」으로 나온 경우에 한하며, 정밀검사분에 대하여는 B/L만 정정하시면 되고, 검사를 필요치 않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B/L주가(통관지원과에 신청)를 하고 하선을 추가하면 됩니다.

주가시 구비서류는 ①적하목록정정신청서 2부, ②사유서, ③정정전·후 B/L(copy 가능) 1부이며 주가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2



Q. 관리대상화물인데 화주가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사전이라도 정정이 가능합니까?

.....

A

관리대상 화물은 검사 후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치결과가 ‘적하목록 정정’인 경우 정정신청 즉시 정정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조치결과가 완료된 후 정정가능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3



Q. M.B/L에 대한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않아 삭제신청 했는데 삭제가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하선도 삭제 신청해야 합니까?

.....

A

제출한 M.B/L에 대한 컨테이너 미선적으로 삭제하는 경우는 동 컨테이너에 대한 하선결과이상보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선결과이상보고가 있다면 EDI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하선도 삭제신청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삭제신청을 한 지 시간이 꽤 지나도 삭제되지 않으면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하선결과이상보고가 없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검수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4



Q. B/L상 컨테이너번호를 잘못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

A

Master B/L의 컨테이너 번호정정은 하선결과이상보고서에 CND(컨테이너 번호 다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하선결과이상보고서 접수 시 자동으로 정정됩니다.

하선결과이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컨테이너번호정정은 서류제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H.B/L의 컨테이너 번호 정정의 경우 선사가 신고한 M.B/L의 컨테이너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로 정정신청할 경우 EDI로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



Q. 한 컨테이너에 B/L이 1개 이상인 LCL cargo인데 이중 한 B/L의 물품이 선적지에서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B/L삭제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한 컨테이너에 여러 개의 B/L중 하나가 선적되지 않아 B/L을 삭제하려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하선결과이상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류로 B/L 삭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6



Q.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는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A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통관전자민원→고객지원(민원안내)→서식명 클릭 후 ‘정정’으로 입력하면 적하목록양식이 나옵니다.

이 양식은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접속이 잘 되지 않으면 선박회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FAX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7



Q. 적하목록정정은 입항 후 몇 일 안으로 해야 합니까?

.....

A

1. 하선결과이상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내
2. 기타의 경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는 같은 모선에 같은 신청인이 같은 일자에 정정신청하시면 10건이내는 10만원이고 10건초과부터는 2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8



Q. 여기 서울인데 FAX로 정정서류 접수가 가능한지요?

.....

A

정정사유에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현재 수하인, 송하인, 품명정정 및 과태료부과 대상인 정정은 EDI로 전송한 후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정정은 사항에 따라 EDI 및 FAX로 접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거리로 인하여 직접 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로 원본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해당담당자로 연락 후 조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9

- ☞ Q. EDI로 정정 할 수 있는 사항과 서류심사로 정정 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주세요?
-

A

EDI 정정	서류심사대상
수량/중량, 용적 정정	수하인 정정
B/L 타입정정	품명정정
운항정보	화물구분, B/L 번호 정정
B/L 삭제(하선결과이상보고서 有)	B/L 분할, 합병 과태료 대상
컨테이너추가/삭제(하선결과이상보고서 有)	B/L추가/삭제(하선결과이상보고서 無)

서류심사대상이라 하더라도 먼저 EDI로 전송(사유에 서류심사대상이라고 기재)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접수 즉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

- ☞ Q. 수량, 중량 정정신청을 하면 어떤 경우는 EDI로 해주고 어떤 경우는 서류심사 대상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왜 그런가요?
-

A

수량, 중량 정정시 과부족(특히 부족)이 10%이상이면 우선 서류심사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기재 오류라고 담당자가 판단하고(예를 들면 0이 하나 빠졌거나 0을 하나 더 삽입한 경우 등) EDI로 정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지면 EDI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정황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만약 EDI로 정정신청 했으나 기각이 되는 경우는 서류심사임을 판단하시고 B/L과 INVOICE, PACKING LIST 등을 구비하시어 세관으로 나오시거나 팩스로 해당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1

- ☞ Q.H B/L의 수량, 중량 정정을 EDI로 보냈는데 정정이 안되네요. 왜 그 런가요?
-

A

H.B/L의 수량, 중량이 늘어나는 경우, M.B/L의 수량, 중량이 늘어나 있지 않으면 H.B/L의 경우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B/L의 수량, 중량이 늘어나는 때에는 선사가 M.B/L의 수량, 중량부터 먼저 정정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H.B/L 정정신청을 하십시오. 중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2

- ☞ Q. 선사인데 수입직하목록 중량정정 신청하고 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화물통관진행정보 상에는 아직 바뀌어 있지 않네요. 어떻게 된거죠?
(H.B/L 있는 건으로 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

A

선사에서 M.B/L의 중량을 정정했더라도 H.B/L이 있는 CONSOL의 경우 화물통관진행정보 상에는 H.B/L의 정보만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선사에서 중량정정 후 H.B/L의 중량도 정정이 되어야 화물통관진행정보 상에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중량을 줄이는 경우에는 H.B/L의 중량을 줄이면 화물통관 진행정보 상에 중량은 줄어져 있으나 선사에서도 M.B/L의 중량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

화물통관 진행정보 상에 줄여진 중량이 나타나더라도 항상 M.B/L의 중량을 확인 후 같이 정정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Q. SHIPPER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O.B/L은 없고 SURRENDER건입니다.
정정이 가능한가요?

.....



A SHIPPER 정정시 필요한 서류는 수하인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
(아래 34~35번 참조)

자주 묻는 질문 34



Q. 수하인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수하인 정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ORIGINAL B/L이 발급되었거나 LC가 개설된 건은 ORIGINAL B/L 또는 L/G(LETTER OF GUARANTEE)원본이 있어야 정정이 가능하며,
- ② SURRENDER된 건은 SURRENDER B/L과 SURRENDER 전문, 정정되는 내용에 대한 선적지의 전문이 필요하며
- ③ 선사 및 포워더의 사유서(정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적지의 요청이 아니라 국내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력되어 수하인이 정정되는 경우는 신청업체의 사유서에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5

☞ Q. 수하인 정정 시 화주사유서로는 안되나요?

.....

A

적하목록 제출 후 입항 반입 단계에서의 적하목록 정정 신청의 자격은 선사 및 포워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하인 정정시에 필요한 사유서에는 정정에 따른 모든 문제를 신청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화주 사유서로는 수하인 정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6

☞ Q. 적하목록상 화물구분을 “수입(I)”으로 해서 신고했는데 송화인이 “환적(T)”진이라 연락이 왔습니다. 화물구분을 바꿀 수 있나요?

.....

A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 실제 환적화물로, 세관에 전송한 적하목록상 Discharge Port가 외국항이며, 수하인과 통지처도 외국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로 화물구분이 수입화물로 잘못 입력된 경우 - (①)은 본래 환적화물인건이므로 정정이 가능

② 수입화물로 신고되고 B/L상 Discharge Port가 국내이며 수하인 또한 국내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 - (②)는 수입화물로 신고 되었으며 화주 또한 국내업체로 신고 되어 있으므로 이때는 환적화물로의 정정은 불가하며 국내의 화주가 반송신고수리를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7

- ☞ Q. 통과화물(T)로 들어왔는데 화물구분을 수입화물(I)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필요한 서류는요?

.....

A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수하인등이 국내 업체여야 하므로 수하인등의 정정도 하셔야 하고 정정신청은 서류로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①정정신청서2부, ②사유서, ③정정전과 정정후 B/L④바뀌는 수하인등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T→I로의 정정은 관리대상선별회피를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시 관리대상화물로 추가로 선별되어 검사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8

- ☞ Q. 컨테이너번호를 정정신청했는데 해당 건은 M.B/L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컨테이너내역이라는 오류가 생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A 이런 경우는 M.B/L도 컨테이너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거나 포워더에서 컨테이너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입니다.

M.B/L의 컨테이너번호가 잘못 신고된 경우는 선사에서 컨테이너번호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선결과이상보고(CND)가 제출되는 건이 아닌 경우는 서류로 정정신청하여야 합니다. M.B/L이 정정된 후 포워더에서는 H.B/L의 컨테이너번호정정을 EDI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M.B/L의 번호가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다면 포워더에서 EDI정정전송시 틀린 컨테이너번호를 입력하신 경우이므로 확인하셔서 맞는 번호로 다시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9



Q. 포워더인데요. 컨테이너번호를 잘못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요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전산으로 정정신청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

A

H.B/L의 컨테이너 번호 정정의 경우 선사가 신고한 M.B/L의 컨테이너 번호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EDI로 정정 가능 합니다.

전산사용이 불가능하실 경우는 정정신청서와 해당 B/L을 첨부하여서 서류제출 하셔도 되고 전산사용방법을 모르시는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 배포 업체(KTNET 등)의 HELP DESK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0



Q. 보세운송중인데 적하목록정정 가능합니까? 보세운송신고 취하하지 않고 정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

A

보세운송 중인 적하목록에 대하여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을 꼭 원하실 경우, 만약 화물이 보세운송 출발지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보세운송을 취하하고 적하목록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물이 보세운송 출발지에서 반출되었다면 보세운송 된 화물이 도착지 창고에 반입된 후, 도착지 세관에 적하목록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1

- ☞ Q. 보세운송 신고수리 되어서 양산에 반입되었고, 반입이상보고 전송도 했습니다. 부산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A

도착지보세구역에서 반입사고 등록을 하고 난 후에 보세운송 반입지 세관에 정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입항반입 이후 보세운송반입 단계에서는 반입지 세관에 적하목록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정신청을 EDI로 전송하여도 접수시점에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입지세관》 보세운송도착지세관》적하목록제출세관 순으로 적하목록 정정신청가능세관을 확인하여 불일치할 경우 접수오류메시지 “00세관에 정정신청하세요”를 통보하며 정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2

- ☞ Q. 냉동 벌크화물을 하역하면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건인데, 컨테이너 적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까?

.....

A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 의해 냉동화물 등의 벌크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에 적입하면 익일까지 검수(검정)회사의 협정서 첨부하여 컨테이너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작업완료 익일까지 정정하시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3

- ☞ Q. 우리회사는 적하목록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없어 KINET에서 대행해 주는데 대행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품명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하려 합니다. 품명정정은 과태료건이라 들었는데 이때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요?

.....

A 실수로 품명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품명정정은 과태료건이며 과태료는 적하목록작성자인 포워더에게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4

- ☞ Q. 화주가 통관하고 난 뒤 창고에서 컨테이너개장을 해보니 물건이 신고 된 양보다 더 나왔다고 합니다. 적하목록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수입신고수리된 후 반출되지 않은 건은 세관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면 적하목록을 정정 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이미 수입신고수리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보세창고에서의 반출내역이 삭제되고 반입내역정정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수입신고 사항 및 세액사항도 정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수입신고수리 및 세액과 관련된 부서에서 정정에 대한 확인을 받고 반출과 반입을 정리하신 후 관련서류(B/L, INVOICE, PACKING LIST)를 첨부하시어 적하목록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45

- ☞ Q. 화주가 통관하고 난 후 자기 창고에서 컨테이너개장을 해보니 신고한 양보다 부족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차이만큼의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적하목록부터 정정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적하목록정정이 가능한가요?

.....

A 수입신고수리 된 후 반출되지 않은 건은 세관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면 적하목록을 정정 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정정 후 줄어드는 경우는 이미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반출되기 전의 현품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적하목록정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의 제반서류에 의거하여 적하목록 등재내역과 사실내역의 상이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하목록정정이 가능합니다.

요구서류 : ①적하목록정정신청서, ②수입화주(각서)와 정정신청자의 사유서
③물품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④정정된 ORIGINAL B/L
⑤수입화주의 관련물품 입고내역 증빙자료 ⑥관련전문
⑦클레임 제기내역 ⑧화주의 창고 입고대장 ⑨기타 증빙자료

사안에 따라서 위의 서류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제출한 자료만으로 수량이나 중량의 상이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6

- ☞ Q. 아직 배는 입항안했고요 지금 막 선별마감 되었는데 품명을 제가 잘못 전송했습니다. 이런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까?

.....

A 이미 적하목록이 제출되어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때의 품명정정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적하목록 제출시 품명은 특히 주의해서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7



Q. 냉동 벌크화물을 하역하면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건인데, 컨테이너 적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까?

.....

A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 의해 냉동화물 등의 벌크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에 적입하면 익일까지 검수(검정)회사의 협정서 첨부하여 컨테이너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작업완료 익일까지 정정하시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8



Q.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EDI로 전송했더니 “적하목록 제출관련 체납 과태료가 있습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정정신청서가 맞게 접수되었나요?

.....

A

2008.5.14부터 적하목록 정정신청시 당해 선사(항공사), 포워더 등으로 징수 시스템을 조회하여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오류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적하목록 제출관련 체납 과태료가 있습니다”라는 체납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오류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할 뿐 과태료 체납내역을 안내하는 안내메시지이기 때문에 동 메시지가 전송되더라도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접수됩니다. 다만 다른 오류메시지가 같이 전송된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은 건이니 오류내역을 확인하여 재전송해야 합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Tel 051-460-63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하선신고 정정

자주 묻는 질문 1

☞ Q. 하선신고 및 정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

A 처음 하선신고는 운항선사와 용선사에서 합니다. 그 후 하선정정은 각 B/L을 제출한 선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선신고 및 정정은 M.B/L 단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워더에서는 정정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선사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선신고 및 정정은 EDI 및 서류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 Q. 하선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A 하선장소는 기본적으로 화물의 특성에 따라,

구분	하선장소	비고
컨테이너화물	- CFS를 포함한 CY	
산물 등 기타화물	- 부두 내 보세구역	
냉동컨테이너화물	-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위험물 등의 특수화물	- 해당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자주 묻는 질문 3

☞ Q. 관리대상화물은 하선장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관리대상화물 심사, 선별 및 하선장소 변경(지정)은 화물검사과(문의처: 051-460-6165)에서 실시하며, 변경된 하선장소를 확인하시고 해당지정장소로 화물을 반입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 Q. 관리대상화물도 하선정정을 할 수 있나요?

.....

A 관리대상화물 중 즉시검사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하선장소를 정정할 수 없으나 검색기 검사화물은 검색기 통과 후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하선장소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하선장소 정정 가능 여부		비고
관리대상화물	즉시 검사화물	지정 장치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으로 정정 불가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검색기 검사화물	검색기 통과 후 이상없는 화물에 한 해 정정 가능	이상이 있는 화물은 세 관장 지정 장치장소에 즉시 반입
일반화물		입항일(접안일)로부 터 3일이내만 정정 가능	3일 이후라도 과태료 납부 의사 확인 후 정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5



Q. LCL화물을 입항 전에 보세운송 및 수입신고 할 수 없나요?

.....

A

LCL화물의 경우

재래부두와 부두직통관 터미널의 업무처리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래부두의 경우 ID(IT)건은 수입신고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는 하선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H B/L이 2개 이상인 LCL화물의 입항전수입신고 및 입항전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두직통관 터미널의 경우 H B/L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ID +터미널부호로 처리하므로 입항전수입신고(보세운송)가 가능하나 물품반출을 위해서는 한 컨테이너내의 모든 H B/L이 통관완료(보세운송신고수리)되어야 합니다.

※ 참고 (하선신고방식), 20Page참조

부두직통관터미널

재 래 부 두

ID +터미널부호
IT +터미널부호

ID + 수입신고번호
IT +보세운송신고수리번호

자주 묻는 질문 6

- ☞ Q. 입항전 수입신고와 하선전 보세운송신고 같은 하선장소를 03046000 으로 하나요? 아님 부두코드를 넣나요?
-

A

입항전 수입신고 및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하선신고 시 체크기준

수입신고/ 보세운송	수입신고 반입장소/ 보세운송출발지	하선신고 구분부호	하선신고시 하선장소	비고
수입신고	XXX46000	n/a(상관없음)	n/a	n/a
	부두직 통관대상		하선신고의 하선장소와 수입신고서의 반입장소 동일여부 체크	하선신고 접수불가
보세운송신고	XXX46000	n/a(상관없음)	n/a	n/a
	부두직 통관대상		하선신고의 하선장소와 보세운송신고의 출발지 부호와 동일여부 체크	하선신고 접수불가
수입신고수리	XXX46000	ID만 허용	n/a	n/a
	부두직 통관대상		하선신고의 하선장소와 수입신고서의 반입장소 동일여부 체크	하선신고 접수불가
보세운송 신고수리	XXX46000	IT만 허용	보세운송 신고번호 자 리수 체크(20자리)	하선신고 접수불가
	부두직 통관대상		하선신고의 하선장소와 보세운송신고의 출발지 부호와 동일여부 체크	하선신고 접수불가

자주 묻는 질문 7

- ☞ Q. 입항전 수입신고시 하선장소를 03046000으로 하나요? 아님 부두코드를 넣나요?

.....

A

입항전수입신고서의 반입장소(검사장소)란에 재래부두인 경우는 03046000, 터미널인 경우는 터미널부호를 기재합니다.

그 후 입항전수입신고건의 하선신고시에 하선장소가 재래부두인 경우 ID+수입신고번호로 신고를 해야 하고, 터미널인 경우 ID+터미널부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 ☞ Q. 원래 하선은 터미널인데 화주가 입항전보세운송을 재래부두로 해서 하선신고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입항전보세운송신고중 재래부두로 입항전보세운송신고를 한 경우 하선은 IT+보세운송신고번호만 입력가능하므로 하선이 터미널이라면 입항전보세운송을 취하한 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

- ☞ Q. 반입 후 하선정정은 안되나요?

.....

A

반입 후에는 정정이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 ☞ Q. 환적화물이 본선에서 본선으로 이동하는데 이럴 땐 하선장소를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

A 적하목록제출 후 하선신고는 03048000으로 잡으시고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

- ☞ Q. M B/L을 추가하여 하선도 추가하려 하는데 하선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A 최초 하선신고는 용선사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용선사에서 한건이라도 하선신고를 한 상태이면 B/L 추가 후 하선추가(통관지원과)가 가능하나 추가하는 B/L이 용선사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B/L인 경우는 하선 추가가 아닌 하선신고(화물검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 ☞ Q. M.B/L을 삭제 신청을 해서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선도 삭제해야 하나요?

.....

A 예, 하선은 M.B/L단위로 신고가 되므로 하선도 삭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

- ☞ Q. 하선신고서 전송 후 “하선장소가 세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라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원인이 무엇인가요?

.....

A

하선 장소에 기재한 보세구역부호가 세관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부호이거나 폐업된 보세구역부호일 경우이거나,

보세구역부호의 관할세관은 A세관이나 하선신고를 B세관으로 잘못 전송한 경우

또는 하선장소에 기재한 보세구역부호가 세관시스템에 등록되어있으나 보세구역부호 등록한 내역의 하선장소구분부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하선신고 오류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모선에 최초 제출하는 B/L인 경우는 하선 추가가 아닌 하선신고(화물검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

- ☞ Q. 하선 후 하선장소로 가야하는데 하선장소가 양산에 있거든요. 이때는 보세운송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입항 후 하선장소로의 이동은 보세운송이 아니라 하선신고에 의해 하선장소까지 하역업체가 직접 셔틀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선장소까지는 하역통로를 이용하여 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역하는 곳이 재래부두이며 하선장소까지 하역통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하선장소로의 이동은 입항전 보세운송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5

- ☞ Q. 하선장소 반입의무기간(3일 또는 10일)에 대한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컨테이너화물은 3일,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은 10일 이내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04.8.01 전에는 하선신고 수리일이 기준이었으나 ’ 04.8.01 이후부터는 적하목록에 기재된 입항일을 기준(선박 접안 이동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안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6

- ☞ Q. 하선장소 반입의무기간 계산시 공휴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

A

반입의무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날을 뺀 다음날까지가 반입의무기간이 되고 공휴일이 반입기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면 공휴일도 반입의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간과 관련한 관세법시행령의 개정(2006.05.22)으로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입항일이 목요일이면 금, 토, 일까지가(3일의 경우) 반입의무기간이 되는데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므로 다음날인 월요일까지가 반입의무기간이 되며, 입항일이 금요일이면 일요일을 산입하여 토, 일, 월까지가 반입의무기간이 되며, 입항일이 수요일이면 목, 금, 토, 일, 월까지가 반입의무기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7

☞ Q. 적하목록 장치예정장소 정정이 가능한가요?

.....

A 해상화물의 경우 업무 진행상 장치예정장소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하선신고시 올바른 장지장소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

☞ Q. 하선반입기간(3일/10일)을 초과하여 하선장소에 물품이 반입된 경우 과태료부과는 어떻게 되죠?

.....

A 과태료 부과는 B/L건별(화물관리번호)로 부과하나, LCL화물은 일괄 한건 (MASTER B/L을 발행한 선사)으로 부과합니다.

과태료 금액(근거조항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 ① 미반입 초과일자 별 1일 경과시 10만원, 2일 경과시 50만원, 3일 경과시 100만원
- ② 미반입 컨테이너 개수 별로 1~2개 미반입시 10만원, 3개~5개미반입시 50만원, 6개 이상 미반입시 100만원을 부과하는데,

컨테이너 화물은 ①, ②항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벌크화물은 ①항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

- ☞ Q. 하선/하기결과 이상보고서 EDI전송하여 접수된 후 재전송이 가능한가요?

.....

A 하선결과이상보고서 EDI전송은 예정전송, 마감전송으로 나누어 있고 마감전송 전까지는 여러번 재전송 가능하며, 마감전송이 정상 접수된 이후에는 재전송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

- ☞ Q. 하선신고서의 B/L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하선신고서 전송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하선신고내역의 B/L을 모두 삭제하여도 공통사항이 남아있으므로 하선신고 재전송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하선신고 공통내역이 남아있으므로 B/L을 추가하거나, 세관에서 본청으로 공통사항 삭제 요청하여 공통사항 삭제 후 하선신고서 다시 전송 가능합니다.

※ B/L삭제는 세관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공통사항 삭제는 세관에서 본청으로 자료삭제 요청 공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III. 출항 적하목록

자주 묻는 질문 1

☞ Q.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시기는 언제입니까?

.....

A 수출(반송물품 포함)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 적재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재신고는 적하목록을 출항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아래의 시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적하목록 제출시기
미국행 해상화물 (미국 경유화물 포함)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기타 화물	적재하기 전까지
①중국 및 일본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화물 ②벌크화물, 공컨테이너, 환적화물	출항 익일까지

* 관세법시행령개정(2006.05.22)으로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계산되므로 출항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출항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화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제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2



Q. 미국행 화물이 1건이라도 포함이 되면 출항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전송하여야 하나요?

.....



1건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24시간 전에 미국행 화물에 대하여 1차 전송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Q. 미주행 화물이 있어 1차마감 후 기타화물에 대해 적재 전 마감을 하고 최종마감을 해야 하나, 1차마감 시기에 최종마감 해버려 2차분을 전송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적하목록 최종마감이후에는 추가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적하목록 승인 후 B/L추가의 방법을 통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종마감을 한 선사가 B/L추가에 대한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Q. 미주행 화물로 1차에 전송해야 하나 전송시기를 놓쳤습니다. 2차에 전송해도 됩니까?

.....



미주행 화물은 1차에 전송하여야 하므로 2차에 전송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차전송건을 적재 24시간 전에 하는 경우에는 비엘 추가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적재 24시간 이후에는 비엘 추가 및 정정 불가하므로 최종마감승인이 난 후 추가 신청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 Q. 미주행 컨테이너 또는 환적화물도 1차마감대상에 포함되나요?

.....

A 공컨테이너나 환적화물, BULK화물의 경우에는 미주행화물이라 하더라도 출항 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

☞ Q. 적하목록 전송시 모든 화물에 화물특성코드를 넣어야 하나요?

.....

A 미주행 컨테이너화물에만 화물특성코드를 넣고 공컨테이너나 벌크화물, 기타 미주행을 제외한 화물에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 Q. 포워더인데요 B/L을 완전히 전송하지 않았는데 운항 선사에서 먼저 최종마감전송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운항선사에서 정상적으로 최종마감전송을 하였다면 B/L누락으로 처리되어 승인 후 추가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Q. 출항적하목록 정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A

출항일로부터 45일 이내(공휴일포함)에 정정할 수 있고, 기간 경과 후 정정시에는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



Q. 적하목록 정정은 어디로 들어가서 해야 하나요?

.....

A

KTNET의 C-TRADEWORLD의 정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정정 또는 추가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Q. 적하목록 정정도 일과시간 이후나 세관휴일에도 가능한가요?

.....

A

임시개정은 정시간 외 통관절차나 보세운송절차 및 입출항절차를 밟고자하는 자만 임시개정을 하실 수 있으므로 적하목록정정은 임시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일등의 업무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

- ☞ Q. EDI로 정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A 정정기한 경과 후 정정신청하는 경우와 오류내역 없는 B/L 추가 등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정정은 서류심사대상입니다. 다만 서류심사대상인건도 미리 EDI신청해(사유: 서류제출예정 등)놓으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접수 후 즉시 EDI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 ☞ Q. 수출적하목록 EDI정정신청내역에 대해 심사없이 자동수리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A 해상 수출적하목록 EDI정정신청 접수내역이 자동수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심사없이 자동 수리처리됩니다

◎ 자동수리 조건

- 적하목록 공통내역(운항정보) 정정

자동수리 대상 항목 : 선박국적, 선박호출부호, 선박명, 출항일자, 항차(항차를 제외한 4가지 항목은 정정 후 내역이 출항보고서와 일치할 경우에만 자동수리됩니다)

- B/L내역 정정

자동수리 대상 항목 : 종용적, 포장종류부호, 컨테이너내역 정정/추가/삭제

- B/L 수출신고내역의 중수량 정정

자동수리 대상 : Master B/L에 대한 수출신고내역의 중수량이 감소되는 경우 자동수리 되고,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의 중수량과 일치할 경우 자동수리 처리됩니다.

단, House B/L에 대한 수출신고내역의 중수량 정정은 Master B/L의 중수량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수리에서 제외됩니다

적하목록 정정기한 경과 건 또는 정정신청서 제출 세관이 적하목록 제출세관과 상이한 경우 등은 자동수리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

☞ Q. 출항적하목록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

A 구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 ① 출항적하목록정정신청서(2부)
- ② 사유서
- ③ 해당 B/L 사본
- ④ 수출신고필증
- ⑤ MANIFEST(필요시)

등이며, 만약 M.B/L과 H.B/L 둘 다 추가대상이면 선사와 포워더가 함께 나오셔서 한번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전산상 함께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

자주 묻는 질문 14

☞ Q. 선박회사 실수로 M.B/L과 H.B/L이 함께 누락되었을 경우에 각각 방문하여 추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과태료는요?

.....

A 선사와 포워더가 동시에 추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선박회사에게 누락된 H B/L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

☞ Q. M.B/L과 H.B/L을 모두 추가하여야 하는데 포워더가 나가서 추가해 도 됩니까?

.....

A 포워더에서 해당업무를 대리하여 추가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명목상 M.B/L정정은 선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M.B/L 추가건에 대하여는 선사의 명판과 직인이 찍힌 정정신청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6

☞ Q. 출항직하목록 정정 시 과태료부과의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A 과태료부과대상은 ① 오류내역 없는 B/L주가와 ② 기간경과 후 주가 및 정정 ③ 품명정정 등입니다.

②번의 기간경과 후 정정건은 H.B/L의 정정을 위해 M.B/L도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
는 H.B/L의 정정에 대하여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H. B/L의 주가에 따른 M. B/L의
주가의 경우에도 H. B/L에 대하여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7

☞ Q. 전송 후 오류확인을 받았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A 관세청시스템상의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송오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TRADEWORLD 세관오류조회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18

☞ Q. MFCS상에서는 오류가 없는데 왜 전송한 자료가 없는 건가요?

.....

A MFCS에서 오류를 정확히 아시려면 ‘세관오류’ 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러면 세관에서 인정하는 정확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

- ☞ Q. 적하목록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행내역 조회에는 'N'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거죠?

.....

A 수출신고조회를 했더니 선적완료여부란에 'N'으로 조회되는 경우는 B/L이 누락되어 'N'으로 조회 되는 경우와 B/L은 있으나 'N'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수출신고 등의 오류로 B/L 자체가 누락된 경우이고 후자는 수량, 중량 등의 불일치로 B/L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불일치로 선적완료가 안된 경우입니다.

B/L이 누락되었으면 B/L추가를 하시고 수량, 중량 등이 불일치가 되면 일치시키는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종마감승인전에 B/L 조회시에는 해당 B/L은 조회되지만 선적완료여부에는 'N'으로 조회되므로 출항 Delay 또는 최종마감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

- ☞ Q. 적하목록정정전송을 했는데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A 선사나 포워더에서 적하목록을 전송하면서 최종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적하목록심사 승인 후 정정이나 추가 등을 신청하는데 보통 정정을 신청하지만 실제로는 B/L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B/L을 전송하면서 수출신고번호를 잘못 기재(이미 선적된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B/L이 누락되므로, 이때는 정정신청을 하시면 안되고, B/L추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가 시 오류내역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1

- ☞ Q. 분명히 출항적하목록에서 B/L정정신청을 하여 승인통보를 받았는데 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거죠?

.....

A

적하목록의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하려면 적하목록정정시 “수출신고내역”과 B/L을 동시에 정정해야만 선적확인이 됩니다.

만일 수출신고내역을 정정하지 않고 B/L만 정정한 상태에서 전송하면 승인은 나지만 정정은 되지 않습니다.

세관시스템은 신청자가 신청한대로만 승인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승인통보 되더라도 수출신고이행내역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정정신청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2

- ☞ Q. 출항적하목록 정정전송을 했는데 승인 안된 건이라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

A

출항적하목록은 운항선사에서 적하목록에 대한 마감전송을 하고 세관에서 승인을 한 후에라야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오류가 발생하면 승인된 건인지 운항선사에 문의하고 정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3

- ☞ Q. 공컨테이너 수출시에 적하목록 작성을 하려는데 「이미 선적된 수출 신고내역입니다」라는 오류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

A 컨테이너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선적완료가 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적하목록상 B/L구분은 EMPTY로 하고 해당컨테이너 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컨테이너를 수출하고 적하목록제출시 수출신고내역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면, 선적완료에 대하여 관세청 전산실에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니 이런 경우에는 세관담당자에게 사유를 설명하시고 해제신청을 하십시오.(FAX로 해제신청서 전송가능)

자주 묻는 질문 24

- ☞ Q. B/L전송을 했는데 오류가 「이미 선적된 수출신고 내역입니다」라는 오류메세지가 있네요. 무슨 뜻이죠?

.....

A 출항 B/L의 전송시에 수출화물은 해당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①이미 사용한 다른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였거나 ②해당 수출신고번호를 다른 B/L이 사용하고 있으면 위의 오류메세지가 생기면서 B/L이 누락됩니다. 이때는 B/L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①의 경우는 제대로 된 해당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여서 추가하여야 하고 ②의 경우는 다른 B/L에 입력된 해당수출신고번호를 삭제한 후 추가하는 B/L에 해당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시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

☞ Q. 분할신적시 수출신고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A 수출신고번호 입력시 분할표시에 Y를 표시한 후 실제 선적수량을 입력하시고 분할 차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6

☞ Q. 분명히 오류통보를 받은 건인데 지금 B/L추가 신청을 하니 세관에서 수신된 오류가 없어 추가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

A 적하목록오류상세내역에서는 오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오류 HISTORY상의 오류발생시간과 선사에서 최종마감한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는 보통 처음 포워더(선사)가 B/L을 제출하고 나서 오류통보를 받고 B/L을 추가한 후 어떠한 사유(정정을 해야 하는데 삭제를 한 경우 등)로 추가한 B/L을 삭제 신청하여 승인통보를 받고 그 B/L에 대하여 재추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오류통보를 받아 B/L을 추가하면 추가되면서 세관오류통보는 없어지므로 한번 추가한 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할 사항이 발생하면 삭제 후 재추가할 때 오류통보가 없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세관직원에게 삭제 후 추가되는 건임을 확인받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7

- ☞ Q. 동시포장시 수출신고는 어떻게 입력하나요(B/L에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A 2건으로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동시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번호 입력시 동시포장여부에 같은 알파벳을 표시 한 후 실제 선적수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복 1세트(상, 하의 각 1매)를 수출한 경우 입력할 때 동시포장에 각각 A(같은 알파벳)를 표시하고 B/L의 경우에는 수량은 동시포장개수와 동시포장개수외의 개수의 합을 넣고 중량은 전체 중량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 분	동시포장 여부	동시포장 개수	기적포장 개수	기적중량	분할선적 여부	분할 회수
수출신고번호	A	1①	2②	200KG⑤		
수출신고번호	A	1①	4③	200KG⑥		
수출신고번호			1④	200KG⑦		

⇒ 위의 B/L의 동시포장개수는 1개, 선적포장개수는 6개, 기적중량은 600KG임

(※ 선적포장개수의 합 : ①(동시포장개수)+ (②-①(동시포장개수))+ (③-①(동시포장개수))+④ = 1+1+3+1= 6)

자주 묻는 질문 28

- ☞ Q. 수량, 중량이 늘어날 경우 수출신고필증부터 정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적하목록부터 정정해야 합니까?

.....

A

수출신고수리필증을 먼저 정정한 후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세관에서(수출담당자) B/L부터 정정한 후 신청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 있으나 B/L을 먼저 정정하게 되면 늘어난 양만큼은 시스템은 미션적분으로 인식하게 되어 늘어난 부분은 미신고수출건이 되어 전산에서 받아 주지 않음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수출신고수리필증부터 정정하십시오.

이와 반대로 수량, 중량이 줄어드는 때에는 적하목록부터 정정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9

- ☞ Q. 수량, 중량이 늘어날 경우 M.B/L부터 정정해야 하나요?

.....

A

수량, 중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M.B/L부터 정정하셔야 늘어난 양만큼 H.B/L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줄어드는 때에는 H.B/L부터 정정하시고 M.B/L 정정신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30

- ☞ Q. 정정신청 후 「선적포장개수가 통관포장개수보다 크다」고 기각 되었는데 왜 그런지요?

.....

A 수출신고수리필증의 포장개수가 B/L상의 포장개수보다 적은 경우로 수출신고필증을 먼저 정정하신 후 적하목록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포장개수가 같은데도 이런 사유로 기각되면 수출신고필증을 다른 B/L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니 수출이행내역조회를 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1

- ☞ Q. B/L 두건에 서로 다른 수출신고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수출신고번호를 서로 바꾸는 정정신청을 했는데 오류가 뜹니다. 왜 그런가요?

.....

A 이런 경우 수출신고번호 정정을 하게 되면 통관분보다 선적분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정정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번호정정을 하시면 안되고, 먼저 각각의 B/L에 들어 있는 수출신고번호를 삭제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다시 수출신고번호를 추가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2

- ☞ Q. H.B/L 추가 전송을 했는데 「M.B/L보다 큽니다.」라는 사유로 기각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

A

이런 경우에는 M.B/L이 실제 H.B/L보다 작은 경우와 M.B/L과 H. B/L의 일치함에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M.B/L을 먼저 정정한 후에 H.B/L을 추가하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는 M.B/L의 중량의 합과 H.B/L의 중량의 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오류로 M.B/L은 전송과정에서 소수점이 절삭되고, H.B/L은 소수점이하자리까지 전송되어 소수점이하자리의 불일치로 해당 H.B/L이 M.B/L보다 크다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H.B/L의 소수점이하 자리수를 버리시고 추가전송하시거나 M. B/L의 중량을 필요 한 만큼 늘여놓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 ☞ Q. B/L번호가 정정되는데 정정신청 할 수 있나요?
-

A

출항적하목록의 정정에는 정정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B/L번호의 정정, ②화물구분의 정정, ③B/L 타입의 정정 등은 정정란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정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정정에 따른 삭제」라고 기재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B/L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의 주가는 정정을 위한 주가이므로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4

- ☞ Q. 금요일에 출항하는 중국행 선박에 대한 적하목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데...

.....

A

중국 및 일본행 화물 및 환적화물의 경우의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기는 출항의일까지이나 출항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 최종마감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출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토요일 24시까지 최종마감을 하여야 하나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기간계산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마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관 시스템에서는 출항제출시기에 맞춰 선사에서 최종마감하지 않더라도 관세청에서 강제마감을 하니 제출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5

- ☞ Q. 적하목록 승인(심사완료)건에 대해 승인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

A

당일 승인건에 한하여 승인취소가 가능하며, 세관에서 승인취소 실행하면 적하목록의 처리상태가 접수상태로 변경되어 업체(선사, 포워더)에서 B/L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승인취소 후 B/L을 재전송하려면 MFCS시스템의 처리상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MFCS시스템의 처리상태 변경은 세관 적하목록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후 업체에서 KTNET으로 처리상태 변경요청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6



Q. 미주행 화물에 대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하는데 아직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일까지만 수리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하목록만 제출하고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일까지만 받급받으면 안될까요?

.....

A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조에서 수출신고필증은 적재전까지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적재신고의 시기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 관한고시 제3-1-7조에서 미주행 화물은 선적24시간 전까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주행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적재24시간 전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기 전까지 반드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주행이외의 수출화물의 경우에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7



Q.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고 출항일 이후에 수출신고필증이 수리되었는데 적하목록 전송이 안되는데 왜 그런지요?

.....

A

34번의 경우처럼 선적 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은 「미신고수출」이 되어 적하목록을 전송하여도 그 내역은 누락됩니다.

이 경우는 조사의뢰 후 통고처분 등 결과통보 이후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통고처분과는 상관없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8

- ☞ Q. 출항적하목록이 미제출 되었다고 세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문명히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A 세관시스템에서 적하목록미제출로 분류되는 경우는

- ①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선사 담당자의 실수로 출항허가서의 적하목록관리번호와 출항적하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를 달리 제출한 경우
 - ② 공선으로 출항한 선박임에도 출항보고서상에 적재중량을 기재한 경우
 - ③ 선박은 출항하였으나 실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①의 경우는 출항허가서와 출항적하목록의 번호 중 틀린 것을 정정하면 되고 ②의 경우는 공선처리하면 되는데 이 때에도 만약 출항허가서에 당항적재톤수가 0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0으로 바꿔야 하며 ③은 조사의뢰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9

- ☞ Q. 선박 자체가 수출되어 출항을 합니다. 적재화물이 없는데 따로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

A 선박이 수출되어 적재화물없이 출항을 하는 경우에도 적하목록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선박이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다음 과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적재화물없이 수출하려는 때에는 목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
2. 보세공장에서 신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때 외에는 **미제출 시 조사의뢰 대상입니다.**

* 공컨테이너만 적재 후 출항하는 경우에도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0



Q.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인데 이 선박 자체가 수출되는 건입니다. 이때에도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

A

위 경우와 같이 선박을 제조하여 수출하면서 선박에 화물을싣지 않고 선박만이 출항하는 때에도 선박에 대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출항하면 적하목록미제출로 간주되어 조사의뢰 됩니다. 출항적하목록과 관련하여 우리과 물류계에서 조사의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관세법 제136조를 위반하여 제276조에 의거 위 36번과 같이 출항적하목록 미제출로 처벌되는 경우와

둘째, 관세법 제140조를 위반하여 제276조에 의거 위 35번과 같이 내국물품 무단적재(미신고수출)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1



Q. B/L 삭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

A

출항 B/L 삭제의 경우에는 삭제 사유를 정확히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오류, 담당자 실수 등은 세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적취소나 미선적으로 적어주시면 확인해서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IV. 환적화물 적하목록

자주 묻는 질문 1

☞ Q. 환적화물은 출항 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출항 시 제출하는 환적화물의 적하목록에는 화물구분에 ‘R’을 입력해야 하며 ‘R’로 입력된 적하목록은 수출신고번호가 아닌 화물관리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적화물은 해당화물의 입항 시 부여된 입항 화물관리번호를 출항 시 수출신고 번호대신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 Q. 환적화물의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A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번호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듯 환적은 입항화물관리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C-TRADEWORLD에서 오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조회에서 입항적하목록과 출항적하목록의 수량과 중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적반출만 되었다고 출항이 완료된 것은 아니니, 항상 출항적하목록제출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Q. 출항 후 환적화물의 입항적하목록과 출항적하목록의 수량, 중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정을 해야 하나요? 정정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

A

환적화물은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 수입 또는 반송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품이므로 우리나라에 반입한 화물의 전량이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데 입항보다 출항한 수량이 적다면 부족한 양은 미선적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적화물도 수입이나 수출화물과 같이 적하목록의 정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방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Q. 환적화물인데 입항적하목록과 출항적하목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정을 하려 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죠?

.....

A

환적화물은 입항과 출항이 연계된 화물입니다.

따라서 입항적하목록은 입항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항적하목록은 출항일로부터 45일 이후에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입항, 출항 중 어느 쪽이 정정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 ☞ Q. 한국에서 수입하기 위해 쇠고기를 수입했으나, 검역불합격으로 반송을 하여야 하는데 ○○국에서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적지에서 환적화물로 정정한 후 환적화물로 진행시켜 달라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

A 입항 시 정상적인 수입화물로 적하목록이 제출된 상태에서 검역불합격으로 인해 화물의 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엄연히 적하목록상 수하인이 한국에 있으므로 검역불합격으로 제3국으로 가야 할 화물이라면 화주가 반송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

- ☞ Q. 환적화물은 출항목록제출 전 이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A 이적허가는 2003년 5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하선장소에서 곧바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반입, 반출신고의 절차를 생략(2003년 5월 1일부터)하고 출항적하목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항적하목록 제출 ⇒ 하선신고 ⇒ [(반입) ⇒ (반출)] ⇒ 출항적하목록 제출
생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7

- ☞ Q. 수입화물(I)인데 담당자의 실수로 환적화물(T)로 신고 했습니다. EDI로 정정 가능한가요?

.....

A 환적화물과 수입화물은 적하목록 심사 시 다른 기준에 의해 심사되므로 환적화물로 신고되어 심사된 화물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EDI로 정정 할 수 없으며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화주의 통관실적을 알아야 하므로 반드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 ☞ Q.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A 환적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냉동화물, 위험물 등 특수화물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보세창고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컨테이너작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세구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

☞ Q. 환적화물도 보수작업을 할 수 있나요?

.....

A 예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적화물의 보수작업은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파손이나 변질, 분할, 합병, 원산지표시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며,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 Q. 내국환적운송을 위해서는 적하목록제출시에 수입화물로 신고하고 화물속성을 '1'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화물 속성을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화물속성에 1을 넣지 않으면 반입보세구역에서는 수입화물로 간주하여 통과화물반출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물속성을 1로 정정하여야 하며 EDI로 화물속성을 정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

☞ Q. 환적 EMPTY 컨테이너의 출항적하목록은 어떻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

A 시스템상 EMPTY 컨테이너의 출항적하목록은 일반 적하목록과 달리 수출신고번호나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적의 경우에도 입항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출항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입항시에 수량과 중량을 ‘0’으로 입력하지 않은 EMPTY 컨테이너의 경우는 미션적으로 처리되어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EMPTY 컨테이너의 적하목록 작성시에는 수량, 중량을 ‘0’으로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출항적하목록 제출시 반드시 입항 화물관리번호를 넣고 입항과 출항의 수량과 중량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 Q. 환적화물이 우리나라에서 일시 장치만 되었을 뿐 어떤 작업도 없이 원상태로 반출되었습니다. 수입국에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데 발급이 가능합니까?

.....

A 환적화물이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만 되었을 뿐 컨테이너 개장, 구분 등 어떠한 작업도 없었던 경우에 ‘환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적화물의 원상태 반출을 증명 받고자 하는 자는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 신청서’ 2장과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 ‘B/L사본’, ‘400원의 수입인지’ 등을 준비하여 오시면 확인 후 환적증명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

- ☞ Q. 환적화물인데 출항적하목록제출시 송하인 주소에 KOREA를 기재하였더니 송하인 주소지를 확인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A 최근 가짜상품 우범국가의 화물이 환적화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한국산으로 위장 반출하여 미국, 일본 등 제3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입항시에는 외국의 실제 송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출항시 국내 송하인으로 고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출을 방지하고자 환적화물의 경우 적하목록제출시 송하인 주소에 KOREA를 입력하면 오류메세지가 뜨도록 전산조치 하였습니다. 이 오류메세지는 확인메세지로 이로 인하여 b/l이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07.01부터 출항적하목록의 송하인 주소가 적하목록의 필수기재항목(5자리이상 기재)으로 변경되어 2006.07.06부터 전산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에서는 환적화물 중 해당 B/L(SIMPLE은 M B/L, CONSOLE 은 H B/L)의 송하인 주소에만 적용(미기재시 오류메세지 남기고 B/L누락)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T I P



『M상선 이대리가 출항 적하목록 오류를 줄이는 노하우!!』

출항 적하목록 1차 전송



오류내역 조회 및 조치 (선사, 포워더별 가능)



출항 적하목록 2차 전송



오류내역 조회 및 조치



3차 전송(오류 내역 정리 후 최종 마감전송)

C-TRADEWORLD에서 제공하는 사전오류검증 및 오류내역만 조치하여도
“오류발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부산세관 운항선사별 담당조 및 전화번호

통관지원과 FAX : 051)460-6119, 6129

※ 아래에 기재되지 않은 선사코드는 H조에서 담당합니다(통관지원과)

선사코드	담당조	선사코드	담당조	선사코드	담당조	선사코드	담당조
AHIT	F	EGLT	F	LDSL	F	SACL	F
ANLU	D	EISC	H	LEBE	H	SAFA	F
ANLX	F	EPSA	H	LNU	F	SASC	D
APLO	D	EVER	F	LRSC	D	SASU	H
APLU	H	FCFT	D	LTXU	F	SCLK	F
ARMA	H	FORT	F	LYGX	H	SCWN	D
ASCO	D	FROT	F	MAEU	F	SEAU	F
BASL	F	FSCO	F	MRDA	D	SENU	D
BHPT	F	FUHL	H	MFSL	H	SFLL	H
BHPX	H	GBHS	H	MISC	D	SJDA	H
BNAM	D	GEAR	H	MOLU	D	SJON	D
BRDG	F	GGOS	D	MSCU	F	SJSC	F
BSNA	F	GLDN	F	MWHL	F	SKKL	H
CBMC	F	GLOB	D	NBOS	F	SMWC	H
CCNI	D	BLOX	H	NCLL	H	SNZM	F
CHDX	F	GNOS	D	NISC	H	SPIC	H
CHIW	D	GSCO	F	NISL	D	SPLF	D
CKCO	F	HASL	D	NLBU	D	SPLO	F
CLAN	H	HDMU	D	NOLS	F	SSIS	H
CLCL	D	HJSC	F	NOSU	F	SUDU	F
CMAL	F	HLCU	D	NSKU	H	SUNM	H
CNGC	H	HMLU	F	NSLC	D	SUNW	H
CNIU	H	HSLI	H	NSLU	F	TASU	D
COHE	F	HSSC	H	NSSL	H	TBSX	D
COKO	H	HYSH	F	NTLS	D	TCLD	F
COOL	D	HYST	F	NVXL	F	TEMA	F
COSU	D	ICSC	F	NYKS	F	TGKK	H
CPBR	F	IINO	H	OOLU	H	TJSS	D
CQHL	D	ITGL	D	ORMU	H	TMEC	F
CQMS	H	JRKU	H	ORSH	H	TMSC	F
CSCL	D	JUTH	D	PCLU	D	TNAL	H
CSKA	F	JYLL	F	PCSL	D	TPMX	H
CTIL	H	JYMC	H	PILK	H	TSKU	D

CYLU	F	KAWA	H	PKFC	D	TWCR	F
DDCL	F	KHSC	H	PMCK	F	UASC	F
DDSL	F	KHSP	F	PMCL	H	UCBL	H
DJSC	D	KKUU	D	PNSC	H	UGLX	H
DNAL	D	KMTC	D	POBU	F	UNIL	D
DOSC	F	KPFC	D	PONL	H	VLKT	F
DOTC	D	KSCO	D	POSC	F	WHLU	F
DOVE	D	KWSC	H	PSLC	F	WYSC	H
DRHS	F	KYKT	F	RCLK	F	WYSX	H
DSTS	H	KYKY	F	RELP	H	YMLU	D
DTSK	F	KYSU	H	RICK	D	YSSC	D
DTSX	H	LACO	D	RONC	F	ZIMU	F
EGLP	F						
구 분				전화 (국번 : 051)			
통관지원과(적하목록 정정) 주 무 460-6126			D조	460 - 6134~5			
			F조	460 - 6136~7			
			H조	460 - 6138~9			
			물류개선	460 - 6537			
			반출입	460 - 6121			
화물검사과(적하목록 심사) 주 무 460-6151			적하목록 심사	(주,야) 460 - 6163~5			
			관리대상 화물	(FAX) 460 - 6229			

※ 본 자료는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 등의 세관절차에 관해 업체 및 민원인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